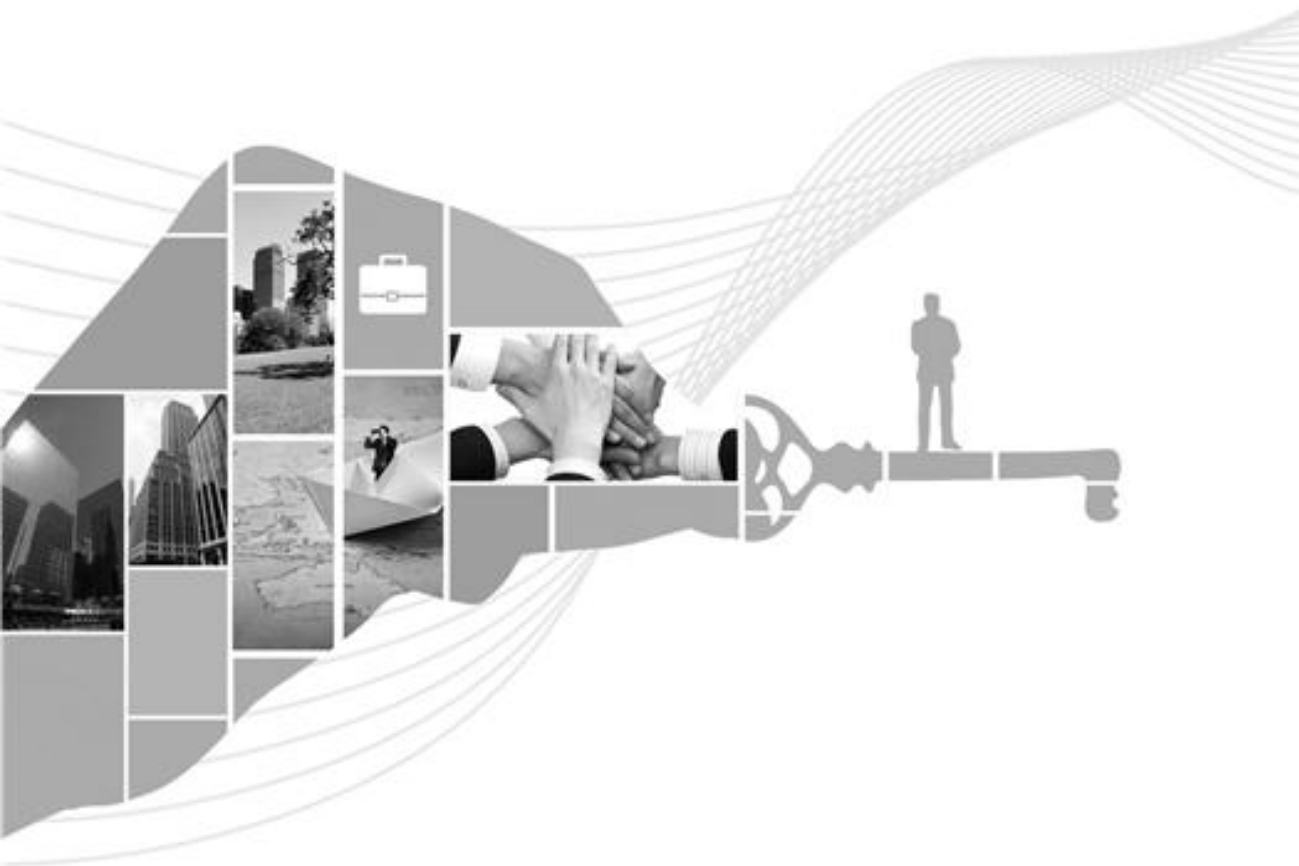


2026~2027

경영행정대학원 요람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ublic Administration, MNU

경영행정대학원 학사업무 일정표

월	업 무 내 용	비고
1월	·제2학기 성적 처리 ·신입생 등록 ·제1학기 수업계획서 제출	·해당 교수 ·신입생 ·해당 교수
2월	·제1학기 등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 신청 ·전기 학위 수여식 ·신학년도 학사 일정표 공고	·재학생 ·신입생 ·학위 수여자 ·행정실
3월	·제1학기 복학 신청 ·제1학기 수강 신청 변경 ·지도교수 배정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복학 대상자 ·해당자 ·신입생 ·3~4학기생
4월	·제1학기 자격시험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본 제출	·3~4학기생 ·수료 예정자
5월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논문 심사위원
6월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2학기 개설 교과목 확정 ·제2학기 수강 신청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후기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및 홍보 ·후기 신입생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논문 심사위원 ·행정실 ·재학생 ·논문 심사 합격자 ·행정실 ·행정실
7월	·제1학기 성적 처리 ·후기 신입생 입학고사 합격자 발표 ·후기 신입생 등록	·해당 교수 ·행정실 ·행정실
8월	·제2학기 등록 ·제2학기 수업계획서 제출 ·후기 학위수여식	·재학생 ·해당 교수 ·학위 수여자
9월	·제2학기 복학 신청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복학 대상자 ·3~4학기생
10월	·제2학기 자격시험 ·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본 제출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및 홍보 ·전기 신입생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특별전형)	·3~4학기생 ·수료 예정자 ·행정실 ·행정실
11월	·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전기 신입생 입학고사(특별전형) ·신학년도 제1학기 개설 교과목 확정 ·전기 신입생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일반전형)	·논문 심사위원 ·행정실 ·행정실 ·행정실
12월	·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신학년도 제1학기 수강 신청 ·전기 신입생 입학고사(일반전형) ·전기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논문 심사위원 ·재학생 ·행정실 ·논문 심사 합격자

목차

C o n t e n t s

I. 경영행정대학원 연혁

- 1. 연혁 6
- 2. 역대 대학원장 8

II. 기구 및 조직

- 1. 기구표 10
- 2. 조직 11
- 3. 과정별 설치학과 13

III. 국립목포대학교학칙 및 경영행정대학원 제 규정

- 1. 국립목포대학교 학칙 15
- 2.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78
- 3. 경영행정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심사 및 작성 등에 관한 지침 93
- 4.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 운영규정 110

IV. 학과(전공)

- 1. 경영학과 118
 - 가. 경영학전공 118
 - 나. 국제통상학전공 124
 - 다. 금융보험학전공 129
 - 라.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134
 - 마. 전자상거래학전공 140
- 2. 행정학과 144

가. 행정학전공	144
나. 지적학전공	150
3. 법학과	156
가. 법학전공	156
4. 경제학과	161
가. 경제학전공	161
나. 글로벌MBA전공	166
5. 학과간 협동과정	171
가. 지역발전정책학 전공	171
나. 사회적경제학 전공	175

I

경영행정대학원 연혁

1. 연혁

2. 역대 대학원장

1. 연 혁

1991. 2. 28. ◆ 경영행정대학원 설립인가 (석사과정 6개학과, 학생정원 95명)
경영학과, 무역학과, 지역개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전산통계학과
1991. 3. 5. ◆ 초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법학과 김 영 법학박사 취임
1991. 9. 5. ◆ 공개강좌 관리자과정 개설
1992. 7. 28. ◆ 경제학과 신설(석사과정 총 7개학과, 학생정원 105명)
1993. 3. 4. ◆ 제2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유왕렬 문학박사 취임.
1995. 3. 1. ◆ 제3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손형섭 경제학박사 취임.
1996. 3. 1. ◆ 제4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경영학과 김휘인 경영학박사 취임.
1997. 3. 1. ◆ 제5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법학과 노진영 법학박사 취임.
1997. 3. 1. ◆ 입학정원 42명
1998. 3. 1. ◆ 제6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장주 경영학박사 취임.
1999. 3. 1. ◆ 금융보험학과, 관광경영학과, 지적학과 신설(석사과정 총 10개학과 입학정원 42명)
1999. 3. 1. ◆ 제7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임동오 경영학박사 취임.
1999. 3. 1. ◆ 공개강좌 관리자과정을 최고경영자과정으로 명칭변경
2000. 3. 1. ◆ 제8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경제학과 홍동문 경제학박사 취임.
2000. 3. 1. ◆ 학과간 협동과정(지역발전정책학)신설
(석사과정 총 10개학과 입학정원 42명, 지역발전정책학 입학정원 30명)
2001. 3. 1. ◆ 제9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무역학과 강정훈 경제학박사 취임.
2001. 3. 1. ◆ 4개학과 10개전공, 학과간협동과정(지역발전정책학)으로 학과 통폐합
2002. 3. 1. ◆ 제10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장주 경영학박사 취임
2004. 3. 1. ◆ 제11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이동신 경제학박사 취임
2005. 3. 1. ◆ 제12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임동오 경영학박사 취임
2007. 3. 1. ◆ 제13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김연수 경영학박사 취임
2009. 3. 1. ◆ 제14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법학과 김신규 법학박사 취임
2009. 3. 1. ◆ 학과간 협동과정(세무·경영학)신설
(석사과정 총 4개학과 10개전공 입학정원 42명, 2개 협동과정 입학정원 30명)
2010. 9. 1. ◆ 학과간 협동과정(사회적기업학)신설
(석사과정 총 4개학과 13개전공 입학정원 통합 72명)
2011. 3. 1. ◆ 입학정원 50명

2011. 3. 1. ◆ 경영학과(전산정보학)폐지(석사과정 총 4개학과 12개전공 입학정원 50명)
2012. 3. 1. ◆ 학과간 협동과정(세무경리학)폐지
(석사과정 총 4개학과 11개전공 입학정원 50명)
2012. 3. 1. ◆ 제15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행정학과 양승주 행정학박사 취임
2012. 3. 1. ◆ 수업연한단축(논문창구학위제 5학기→4학기, 무논문창구학위제 6학기→5학기)
2014. 3. 1. ◆ 제16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행정학과 박종두 행정학박사 취임
2016. 2. 19. ◆ 경영학과 무역학을 국제통상학으로 명칭변경(2016.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
2017. 7. 13. ◆ 경영학과 관광경영학을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으로 명칭변경(2018. 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
2017. 9. 1. ◆ 제17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홍식 경영학박사 취임
2019. 12. 4. ◆ 제18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지적학과 최승영 법학박사 취임
2020. 12. 4. ◆ 제19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영석 경영학박사 취임
2021. 11. 8. ◆ 전자상거래학전공 신설(2022. 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
(석사과정 총 4개학과, 12개전공, 입학정원 50명)
2022. 2. 3. ◆ 사회적기업협동과정을 사회적경제협동과정으로 명칭변경(2022. 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
2022. 8. 19. ◆ 행정학과(지역개발학)폐지(석사과정 총 4개학과 11개전공 입학정원 50명)
2022. 12. 21. ◆ 제20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록 행정학박사 취임
2024. 12. 21. ◆ 제21대 대학원장에 본 대학교 경제학과 고두갑 경제학박사 취임
2025. 3. 1. ◆ 글로벌MBA 전공 신설(2025. 전기 외국인 신입학생부터 적용)
(석사과정 총 4개학과 12개전공, 입학정원 50명)

2. 역대 대학원장

구 분	직 급	학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제 1대	교 수	법학박사	김 영	1991. 3. 5. ~ 1993. 2. 28.
제 2대	교 수	문학박사	유 왕 렬	1993. 3. 4. ~ 1995. 2. 28.
제 3대	교 수	경제학박사	손 형 섭	1995. 3. 1. ~ 1996. 2. 29.
제 4대	교 수	경영학박사	김 휘 언	1996. 3. 1. ~ 1997. 2. 28.
제 5대	교 수	법학박사	노 진 영	1997. 3. 1. ~ 1998. 2. 28.
제 6대	교 수	경영학박사	이 장 주	1998. 3. 1. ~ 1999. 2. 28.
제 7대	교 수	경영학박사	임 동 오	1999. 3. 1. ~ 2000. 2. 28.
제 8대	교 수	경제학박사	홍 동 문	2000. 3. 1. ~ 2001. 2. 28.
제 9대	교 수	경제학박사	강 경 훈	2001. 3. 1. ~ 2002. 2. 28.
제 10대	교 수	경영학박사	이 장 주	2002. 3. 1. ~ 2004. 2. 28.
제 11대	교 수	경제학박사	이 동 신	2004. 3. 1. ~ 2005. 2. 28.
제 12대	교 수	경영학박사	임 동 오	2005. 3. 1. ~ 2007. 2. 28.
제 13대	교 수	경영학박사	김 연 수	2007. 3. 1. ~ 2009. 2. 28.
제 14대	교 수	법학박사	김 신 규	2009. 3. 1. ~ 2012. 2. 28.
제 15대	교 수	행정학박사	양 승 주	2012. 3. 1. ~ 2014. 2. 28.
제 16대	교 수	행정학박사	박 종 두	2014. 3. 1. ~ 2017. 8. 31.
제 17대	교 수	경영학박사	박 흥 식	2017. 9. 1. ~ 2018. 12. 3.
제 18대	교 수	법학박사	최 승 영	2018. 12. 4. ~ 2020. 12. 3.
제 19대	교 수	경영학박사	조 영 석	2020. 12. 4. ~ 2022. 12. 20.
제 20대	교 수	행정학박사	김 병 록	2022. 12. 21. ~ 2024. 12. 20.
제 21대	교 수	경제학박사	고 두 갑	2024. 12. 20. ~ 현재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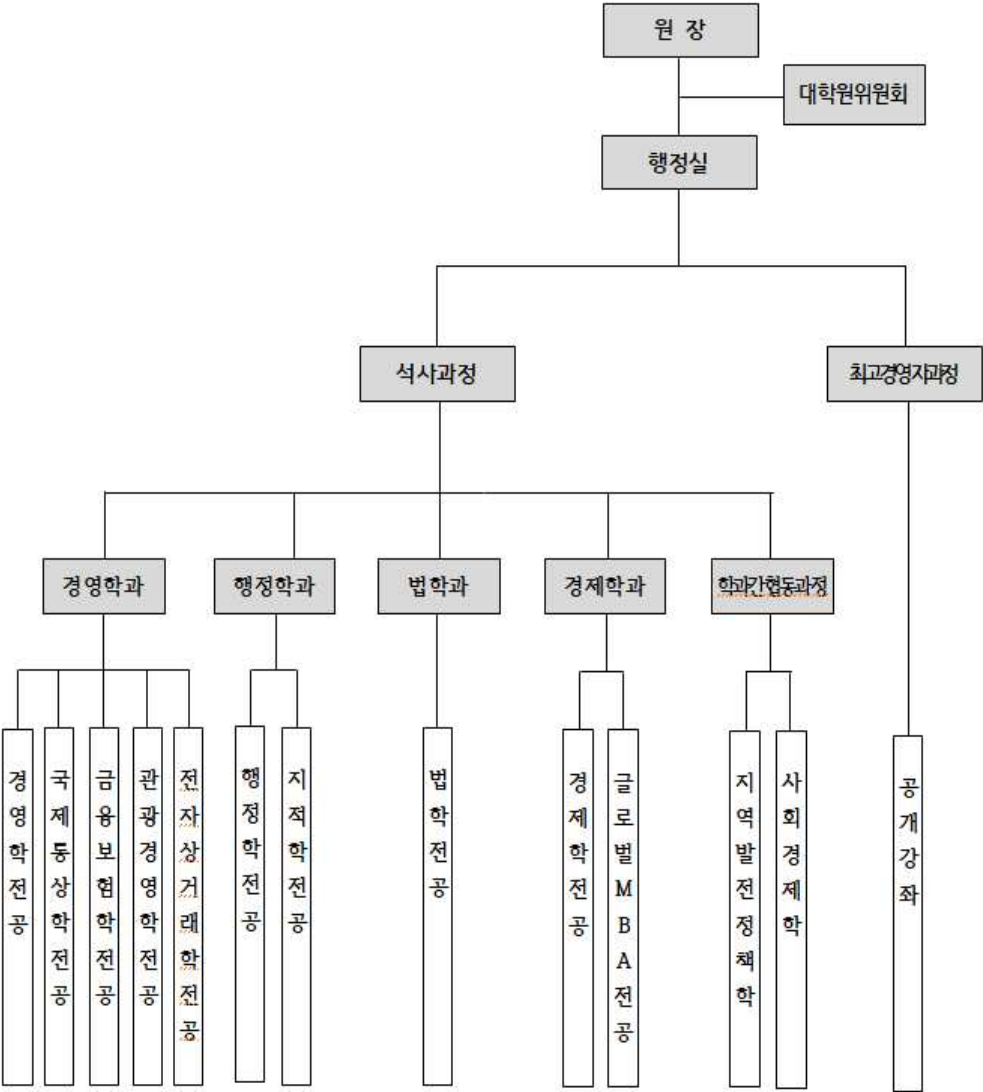
기구 및 조직

1. 기구표

2. 조직

3. 과정별 설치학과

1. 기 구 표



2. 조 직

가. 경영행정대학원

직	위	성	명
원	장	고	두 갑
행	정 실 장	김	상 훈
팀	장	손	진
주	무 관	최	은 정

나. 대학원 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위원장	대 학 원	원장	이성로	당연직
위 원	전 문 대 학 원	"	김정목	당연직(산업대학원 겸직)
"	교 육 대 학 원	"	이헌수	당연직
"	경 영 행 정 대 학 원	"	고두갑	"
"	인 문 대 학	학장	김선화	"
"	사 회 과 학 대 학	"	안영하	"
"	생 명 의 과 학 대 학	"	전경숙	"
"	공 과 대 학	"	김정규	"
"	경 영 대 학	"	윤철호	"
"	생활과학예술택육대학	"	김경희	"
"	약 학 대 학	"	박진우	"
"	미 래 라 이 프 대 학	"	염재선	"
"	교 무 처	처장	박시형	"
"	학 생 취 업 처	"	오명호	"
"	기 획 처	"	심천식	"
"	산 학 연 구 처	"	김성환	"
"	입 학 처	"	김현곤	"
"	국 제 협 력 처	"	홍선기	"
"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교수	최승영	임명직
"	생명·의과학대학학 간호학과	"	조숙희	"
"	약 학 대 학 약 학 과	"	심정현	"

다. 학과 전공별 주임교수

학 과	전 공	직 급	성 명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전 공	부 교 수	우 형 록
	국 제 통 상 학 전 공	교 수	유 병 옥
	금 융 보 험 학 전 공	교 수	이 성 남
	관 광·호 텔·외 식 서 비 스 경 영 학 전 공	교 수	심 원 섭
	전 자 상 거 래 학 전 공	교 수	이 석 인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부 교 수	박 찬 영
	지 적 학 전 공	부 교 수	서 용 수
법 학 과	법 학 전 공	조 교 수	박 석 일
경 제 학 과	경 제 학 전 공	교 수	정 상 준
	글 로 벌 M B A 전 공	교 수	고 두 갑
학 과 간 협 동 과 정	지 역 발 전 정 책 학 협 동 과 정	조 교 수	성 은 영
	사 회 적 경 제 학 협 동 과 정	교 수	정 상 준

3. 과정별 설치학과

과 정	학과(전공)	학위과정 개설년도	비 고
석사과정	경 영 학	1991	
	국제통상학	1991	명칭변경(2016)
	법학	1991	
	행 정 학	1991	
	경 제 학	1992	
	지적학	1999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	1999	명칭변경(2018)
	금융보험학	1999	
	학과간협동과정(지역발전정책학)	2000	
	학과간협동과정(사회적경제학)	2010	명칭변경(2022)
	전자상거래학	2021	
	글 로 벌 MBA	2025	
최고경영자과정		1991	명칭변경(1999)

III

국립목포대학교 학칙 및 경영행정대학원 제 규정

1. 국립목포대학교 학칙
2.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3. 경영행정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심사 및 작성 등에 관한 지침
4.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 운영규정

1. 국립목포대학교 학칙

제정	1979. 03. 01.	개정	1980. 04. 14.	개정	1981. 03. 01.
개정	1981. 09. 29.	개정	1991. 12. 31.	개정	1993. 03. 24.
개정	1993. 04. 07.	개정	1993. 10. 19.	개정	1994. 03. 01.
개정	1995. 03. 25.	개정	1996. 03. 12.	개정	1997. 04. 08.
개정	1998. 02. 26.	개정	1999. 06. 30.	개정	2000. 02. 14.
개정	2000. 12. 26.	개정	2001. 08. 16.	개정	2003. 03. 13.
개정	2003. 05. 27.	개정	2004. 02. 03.	개정	2004. 05. 29.
개정	2005. 02. 28.	개정	2005. 07. 07.	개정	2006. 01. 24.
개정	2006. 05. 23.	개정	2006. 07. 18.	개정	2006. 12. 12.
전면개정	2007. 03. 30.	개정	2007. 11. 23.	개정	2008. 02. 22.
개정	2008. 06. 16.	개정	2008. 10. 30.	개정	2008. 11. 24.
개정	2009. 02. 11.	개정	2009. 03. 16.	개정	2009. 04. 28.
개정	2009. 07. 03.	개정	2009. 08. 31.	개정	2009. 12. 08.
개정	2010. 02. 26.	개정	2010. 04. 21.	개정	2010. 05. 26.
개정	2010. 07. 01.	개정	2010. 09. 16.	개정	2010. 11. 1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1. 01. 27.	개정	2011. 02. 25.
개정	2011. 05. 26.	개정	2011. 09. 06.	개정	2011. 10. 04.
개정	2011. 12. 30.	개정	2012. 06. 15.	개정	2012. 07. 10.
개정	2012. 08. 29.	개정	2012. 09. 25.	개정	2013. 02. 28.
개정	2013. 08. 13.	개정	2013. 10. 01.	개정	2013. 12. 11.
개정	2014. 03. 18.	개정	2014. 04. 01.	개정	2014. 10. 21.
개정	2015. 01. 23.	개정	2015. 01. 29.	개정	2015. 03. 10.
개정	2015. 05. 29.	개정	2015. 07. 08.	개정	2015. 11. 24.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02. 19.	개정	2016. 03. 30.
개정	2016. 08. 08.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09. 04.
개정	2017. 09. 14.	개정	2017. 10. 11.	개정	2018. 01. 22.
개정	2018. 05. 03.	개정	2018. 06. 29.	개정	2018. 10. 10.
개정	2018. 11. 19.	개정	2019. 02. 22.	개정	2019. 06. 01.
개정	2019. 07. 16.	개정	2019. 09. 01.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02. 26.	개정	2020. 04. 10.	개정	2020. 05. 08.
전부개정	2020. 09. 25.	개정	2021. 02. 24.	개정	2021. 05. 31.
개정	2021. 07. 21.	개정	2021. 11. 08.	개정	2022. 02. 03.
개정	2022. 03. 01.	개정	2022. 05. 02.	개정	2022. 08. 19.
개정	2022. 11. 22.	개정	2023. 02. 24.	개정	2023. 04. 28.
개정	2023. 06. 13.	개정	2023. 08. 03.	개정	2023. 12. 18.
개정	2024. 02. 23.	개정	2024. 04. 30.	개정	2024. 07. 05.
개정	2024. 12. 06.	개정	2024. 12. 31.	개정	2025. 02. 28.
개정	2025. 08. 08.	개정	2026. 01. 23.	개정	2026. 02. 28.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립목포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국립목포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창조·덕의·봉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덕성과 신의로 인화를 추구하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공헌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의1(캠퍼스) 이 대학교에 목포캠퍼스, 도림캠퍼스, 남악캠퍼스,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에너지밸리산업단지캠퍼스, 담양캠퍼스, 장흥캠퍼스를 둔다.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교직원 등

제3조(총장) ① 총장은 대학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외적으로 이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지역인재부총장, 학칙이 정하는 행정조직 설치상의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대학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며, 총장 후보자 선출 및 임용 추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의2(부총장) ① 이 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지역인재부총장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 학생, 교육, 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대외협력부총장은 산학협력, 연구, 국제·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지역인재부총장은 담양캠퍼스의 운영 및 지역협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교직원) 이 대학교의 교직원은 전임교원, 강사, 조교 및 행정직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임교원) ①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전공분야에 따라 학부(과)에 소속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의 학과(또는 전공)·협동과정 또는 연구시설에 소속될 수 있다.

④ 총장은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⑤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전임교원의 채용)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임용절차와 심사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비전임교원) ① 이 대학교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수, 학술연구교수, 특임교수, 방문교수, 기금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 등을 둘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초과한 자를 신규임용 하거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④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강사) ① 이 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를 둔다.

② 강사의 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조교 및 행정직원) 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② 행정직원 등 직원은 이 대학교의 행정 및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조교 및 행정직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육조직

제10조(대학·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는 단과대학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의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미래라이프대학, 미래챌린지대학을 둔다.(이하 “대학”이라 한다)

② 이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두며, 전문대학원으로 지역산업정책전문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을 둔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제11조(학장·대학원장) ① 대학에는 학장을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두되,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관련 학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② 학장 및 대학원장은 그 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을 총괄하고,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학장 및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학부·학과 등) ① 이 대학교의 대학 및 총장 직속하에 별표1과 같이 학

부(과)를 둔다.

② 대학원에 별표2와 같이 학과, 전공, 협동과정을 둔다.

③ 제1항에 의거 학생은 별표1, 별표 1-1, 별표 1-2 중 1개의 학부(과)에 소속된다.

④ 제2항에 의거 대학원생은 별표2 중 1개의 학과, 전공, 협동과정에 소속된다.

제13조(학부장·학과장·주임교수 등) ① 대학의 학부에는 학부장 및 전공별 주임교수를,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대학원 각 학과, 전공, 협동과정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다만, 대학원의 주임교수는 대학의 동일전공 학부(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 직속 학부의 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는 해당 학과, 전공, 협동과정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조한다.

④ 대학원에는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등록금,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 및 운영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행정조직,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

제15조(행정조직) ① 이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취업처, 기획처, 산학연구처, 입학처, 국제협력처, 사무국, 운영본부를 둔다. 처·국에는 처장·국장을 두고, 운영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처장·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위로 보한다.

④ 교무처에 교무과, 교육혁신실, 교수학습이러닝센터,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과, 취업지원실, 기획처에 기획조정과, 미래정책실, IR(Institutional Research)센

터, 산학연구처에 산학연구과, 입학처에 입학관리과, 교육협력관실, 국제협력처에 국제협력교육실, 글로벌종합지원센터, 사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행정과, 예비군연대본부를 둔다.

제16조(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단과대학 등에 행정실을 두되,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행정실을 둘 수 있다.

제17조(총장 직속 위원회 및 사업단 등)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재정사업, 연구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위원회 및 사업단 등을 둔다.

② 총장 직속 위원회 및 사업단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의2(부총장 직속 기구 등) ① 대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총장 직속 기구** 등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 직속 기구**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교육기본시설) ①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과 정보전산원을 두며, 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과를 둔다.

② 도서관과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기본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에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을 둔다.

②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구시설) ① 이 대학교에 연구시설을 두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구시설에 장을 두되, 연구시설의 장은 관련 학장 또는 학부(과)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제21조(사무분장 등) ① 이 대학교 행정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분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행정조직의 장 등의 보임직급 및 명칭은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르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실 내에 팀을 둘 수 있다.

제22조(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제23조(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산학연구처장이 겸보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⑤ 산학협력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삭 제>

⑦ 총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교수회와 위원회

제25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

③ 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두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④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재적교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기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수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단과대학교수회) ① 각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대학에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학장이 의장이 된다.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재적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단과대학교수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부(과)의 설치 및 폐지 건의
2. 학생지도, 상벌 및 장학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대학평의원회) ① 이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교무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지역인재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산학연구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사무국장, 운영본부장,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학부총장이 부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대학의 학부(과) 및 전공, 대학원의 학과, 전공, 협동과정, 부속시설·연구시설 설치와 폐지
3. 대학(원)의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이 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산학연구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의 수여에 관한 사항
3. 명예박사학위의 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징계,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보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④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대학인사위원회) ① 이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지역인재부총장, 일반대학원장, 학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산학연구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운영본부장 및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2. 전임교원의 임용제청 또는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4. 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교의 등록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각종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총장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대학 · 대학원 학사일반

제1절 학생정원 및 학위과정

제33조(학생정원 및 별도정원) ① 이 대학교의 대학별 ·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 대학원의 학생정원은 별표4와 같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입학 ·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제34조(학위과정 및 협동과정) ① 이 대학교의 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에 학문적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학 · 연 · 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 · 석사 연계과정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석 · 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온라인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2 제4항에 의거 동일 규정 별표 1의2에 따른 참여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과정의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3.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4. 전문대학원: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제2절 입학·등록 및 등록금

제35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 이내로 한다.

제36조(입학자 선발) ① 입학자 선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3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관련 규정 또는 모집요강 등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삭제
5. 삭제

제38조(등록 및 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서 다음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수강신청학점	납부금액
학사학위 이하과정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학위 이상과정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4학점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제39조(등록금의 감액·면제·반환) ① 법령 또는 이 대학교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등록금 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④ 등록금 반환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40조(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2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 제1학년 학생의 경우 입학한 후 첫 학기에는 제4항 이외의 사유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학 허가일로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병역복무기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학사학위과정은 통산하여 8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학사학위과정은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석·박사학위과정은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기간을 1학기 연장할 수 있다.
4. 병역복무 휴학은 병역복무 기간으로 하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남학생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5.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 ④ 병역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병역복무 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질병 휴학: 전문의 발행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 또는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증명 자료
- ⑤ 질병 치료를 위하여 계속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의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통산 휴학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학할 수 있다.
- ⑥ 창업으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1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 기간이 끝난 후 해당 학기 초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소정의 복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② 병역의무 만료 예정자로서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의 수강허가증 및 휴가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제적)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 다만, 병역복무에 의한 사유로 휴학한 때에는 그 복무를 마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휴학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3.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중 학적을 가진 학생
 4.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5.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학생
 6.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심히 이탈한 학생
 7. 약학과 재학기간 중 유급 3회에 해당하는 학생
- ② 제적처리 대상자에게는 제적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4절 학년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

제44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제2학기는 2주의 범위 내에서 앞당겨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각 3주 이상
4. 특별학기 :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각 3주 이상

③ 학생은 매년 제1학기, 제2학기를 의무적으로 수강 신청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는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개설하되 제45조의 수업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⑤ 계절학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점 이수를 위해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유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하며, 수업을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

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46조(휴업) ① 정기 휴업일은 공휴일,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으로 한다.

② 여름 및 겨울방학의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에도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외학습을 실시하거나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절 교육과정 · 이수단위 · 수업 및 수강신청

제47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과 지침으로 정한다.

제48조(이수단위)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음악학과, 음악공연기획학부 실기과목 포함)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의 이수단위는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목환경과(야)의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수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대학원: 주중·주간
2. 전문대학원: 주중·야간, 주말·주간
3.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주중·야간
4. 교육대학원: 방학 중·주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말 및 야간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④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창업실습 및 창업 현장실습 포함)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매체를 통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필요에 따라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별로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⑧ 계약학과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개강 전에 대학(원)장이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수강을 허가하지 않는다.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④ 교수인력, 강의실(실험실습실을 포함한다)등 교육과정 운영 여건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절 위탁학생 · 재외국민 모국 수학생 · 외국인 학생 · 장애학생

제52조(위탁학생) ① 정부 각 부처의 장이 그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학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학생이 수학 중에 그 소속 부처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제적한다.

③ 위탁학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위탁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53조(재외국민 모국 수학생) ① 재외국민 모국 수학생은 이수능력을 평가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 모국 수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54조(외국인학생 정원 외 입학 등) 외국인 학생의 정원 외 입학 ·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의2(장애학생 특례 및 지원) ①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인정한 사람(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휴학기간(제40조), 재학연한(제65조), 등록금(제38조) 등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의 휴학기간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 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
- ④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절 공개강좌 · 시간제 등록생

제55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시간제등록생) ① 학칙 제61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운영을 하는 시간제등록생(이하 “통합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운영을 하는 시간제등록생(이하 “별도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은 각 모집단위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별도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시간제등록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록금의 책정 등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절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제57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58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이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고, 그 중 이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사람

가. 학사학위: 84학점(학사학위소지자는 48학점)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소지자는 36학점)

3. 학칙 제88조제1항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서 “이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말하며, 이를 통산한다.

1. 이 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2. 이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3. 그 밖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비정규 교육과정 중, 이 대학교가 설치·운영한 교육과정에서 취득하여 인정된 학점

제59조(학위의 종류 및 전공) 학위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칙상의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표준 교육과정과 유사할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다만, 학위종류나 전공이 이 대학교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유사성 판정은 평생교육진흥교육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60조(학위수여 절차) ① 제58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할 때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점인정증명서와 학위신청서 등의 서류를 학위수여예정일 40일 전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장은 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전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해야 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의 결과 통보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학위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4장 대학 학사운영

제1절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61조(입학지원자격) 제1학년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62조(편입학) ① 학사학위과정의 편입학은 대학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3학년으로 일반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제3학년에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편입학은 전문대학 1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2학년으로 일반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이 대학교 내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가 학사학위과정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편입학에 대한 연계 모집단위,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교원 교류방안 등 실질적 연계교육 방안은 따로 정한다.

⑥ 기타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자퇴하거나 제적된 사람에게 당해 모집단위의 동일학년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제4호의 재학연한 초과 및 제99조의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출교처분 자의 재입학은 불허한다.

③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④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된 경우의 재입학은 변경된 모집단위로 한다.

제2절 수학연한 및 재학연한

제64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학과

는 별도로 정한다.

1. 학사학위과정 : 4년(건축학과 5년, 약학과(6년제) 6년)

2.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② 편입학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2년(건축학과 3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

2. 전문학사학위과정: 1년

③ 재입학자·모집단위간 이동자의 수업연한은 인정된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 조기졸업자의 수업단축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하

2. 전문학사학위과정: 1학기 이하

⑤ <삭 제>

제65조(재학연한) ①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학위과정 별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학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③ 재입학자 또는 모집단위간 이동자의 재학연한은 그 이전에 재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초과한 후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으로 하되, 재입학 전에 재학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 제>

제3절 학부운영 및 전공이수

제66조(학부운영) 학부 내에서 전공진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전공이수) ① 학생은 소속 학부(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의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다른 전공(이하 “다전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다.

1. 복수전공

2. 연계전공

3. 융합전공(대학 간 융합전공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학생설계전공

5. 부전공

-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고, 제2항제5호의 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이수사항을 주전공의 학위증에 표기한다.
- ④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및 부전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심화프로그램·트랙의 이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⑥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3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다.
- ⑦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이수 학점은 12학점으로 하며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67조의2(소단위 교육과정) 소단위 교육과정은 신산업분야 및 급변하는 기술과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모집단위간 이동

제68조(시기) 모집단위간 이동은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횟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시기는 학기 초 2주 이내로 한다.

제69조(요건 및 절차) ① 모집단위간 이동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로의 모집단위간 이동은 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② 모집단위 간 이동은 동일 학위과정 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모집단위 간 이동의 시행시기와 허용범위·절차·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교과목이수) ① 모집단위를 이동한 학생은 당해 모집단위의 전공과목 최저이수 소요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② 이미 취득한 학점 중 당해 전공과정의 교과목과 유사하거나 공통되는 교과목은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71조(교과목구분) ① 이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기타교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타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 교직과목, 복수전공과목, 연계전공과목, 융합전공과목, 학생설계전공과목, 부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제72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130학점 이상

2. 아래 학사학위과정 학부(과) 및 전공의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

가. 미래라이프대학 소속학과, 재교육형계약학과, 글로벌학부 글로벌한국학전공: 100학점 이상

나. 조기취업형계약학과: 120학점 이상

다. 간호학과: 135학점 이상

라. 법·경찰학부, 사범대 소속학과, 공학교육인증학과(전기공학과 제외): 140학점 이상

마. 건축학과: 167학점 이상

바. 약학과 2+4년제: 160학점 이상

사. 약학과 6년제: 235학점 이상

3. 전문학사학위과정: 65학점 이상

제7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점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학점에 1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1. 130 ~ 135학점 졸업 학부(과): 18학점

2. 140학점 이상 졸업 학부(과): 19학점

3. 약학과: 23학점

4. 계약학과: 21학점

5. 미래라이프대학 소속학과, 글로벌학부 글로벌한국학전공: 제한없음

6. 65학점 졸업 학부(과): 18학점

② 직전 학기 성적우수자(평점평균 3.75 이상)와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대학 간 융합전공 제외), 학생설계전공 이수자, 학군사관후보생은 기준학점을 3학점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직전 학기 성적우수자(평점평균 3.75 이상)로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기준학점을 최대 6학점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 매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④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취득 학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특별학기에서는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6절 시험 및 성적

제74조(시험) ① 교과목별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이나 학기 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시수가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 된 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질병, 병무관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④ 신입생에게는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에 따라 제73조의 수강 기준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특별시험) ① 학생은 특별시험으로 1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특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6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출석성적 등의 반영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각 교과목별 성적은 D0급 이상을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등 급	실 점	평 점
A ⁺	95-100점	4.5
A ⁰	90-94점	4.0
B ⁺	85-89점	3.5
B ⁰	80-84점	3.0
C ⁺	75-79점	2.5
C ⁰	70-74점	2.0
D ⁺	65-69점	1.5
D ⁰	60-64점	1.0
F	60점 미만	0

- ④ 총장이 따로 정한 특정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취득 또는 미취득으로 하되, 성

적표기는 취득은 “S”, 미취득은 “U”로 하며 총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⑤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7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 된 학생과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유급제를 적용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수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8조(유급) ① 약학과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시킬 수 있다.

1. 학년 전공과목에서 F학점이 3과목 이상인 학생
2. 학년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학생

②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기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 재수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7절 이수의 인정

제79조(학점의 인정) 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매 학기말에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특별시험으로 합격한 교과목은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고 수강을 면제한다.

③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제80조(타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

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편입생이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8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④ 학점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이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을 한 국내·외 대학의 재학생이 이 대학교에 수학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지원(부속)시설 및 각 부서, 기타 연구원(소)에 개설된 강좌의 학점 인정)

지원(부속)시설 및 각 부서, 기타 연구원(소)에 개설된 강좌를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과정간 취득학점 및 인정) ①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생이 이 대학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당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당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자가 석사학위과정 진입 전 중도 포기할 경우 석사학위과정 이수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 학교의 교과목 이수내용

또는 소정의 수료학점을 심사하여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84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재입학 이전의 학점을 참작하여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85조(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2학년부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직과정의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6조(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학 년	수료학점							
	미래라이프 대학 소속학과	130학점 졸업학부(과)	135학점 졸업학부(과)	140학점 졸업학부(과)	건축학과	약학과		65학점 졸업 학부 (과)
						2+4년제	6년제	
제1학년	25학점	33학점	34학점	35학점	33학점	-	38학점	33학점
제2학년	50학점	65학점	68학점	70학점	69학점	-	77학점	65학점
제3학년	75학점	98학점	102학점	105학점	105학점	40학점	117학점	
제4학년	100학점	130학점	135학점	140학점	141학점	80학점	157학점	
제5학년					167학점	120학점	197학점	
제6학년						160학점	235학점	

② 제1항의 수료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학년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절 졸업

제87조(졸업논문) ① 각 학부(과)의 졸업예정자(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는 최종 졸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한 학부(과)는 그 특성에 따라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또는 졸업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8조(졸업 및 학위) ① 제72조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87조의 졸업논문 등(졸업시험, 실험보고서, 실습보고서 또는 실기발표,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6, 별표6-1, 별표6-2, 별표6-3의 학위증별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의 학

위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종별은 학생설계전공을 승인할 때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중 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등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심화프로그램 이수자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수여와 학위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자 또는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9조(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① 학사학위과정에서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약학과 6년제는 12학기)이상,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학위취득유예 또는 학업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학위취득유예: 제88조에 따라 학위취득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강신청 없이 계속해서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2. 학업연장: 제72조 및 제88조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수료 또는 졸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 ② 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0조(복수학위제) ① 국내·외 타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별표6-4**의 학위종별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 ③ 복수학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조기졸업) 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 6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 약학과(6년제)는 10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 총 평점평균이 4.20이상이 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면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 약학과(2+4년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②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 3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 총 평점평균이 4.20 이상이

되면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③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3.50이상이 되고, 제88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졸업의 취소) 졸업자로서 제79조제3항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제86조에서 규정한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제9절 학생활동 및 지도

제93조(학생단체) ① 학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학생회 등 학생단체(이하 “학생단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가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단체가 따로 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제94조(학생지도) ① 학생의 학업, 학생생활 및 학생단체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해 진로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진로지도교수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5조(사회봉사활동의 장려) ① 이 대학교는 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험과 사고를 향상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한다.

② 사회봉사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6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강의나 연구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절 학생포상 및 징계

제97조(교칙준수) 학생은 학칙 및 따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8조(포상)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9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소속 대학 교수회의 및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출교로 구분한다.

③ 징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생의 징계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절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제100조(장학금) ① 학생에게는 소정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1조(학비보조금) 법령에 규정된 학생에게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1절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102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전공은 현직 교원 및 중국어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②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야 하며, 학과별로 석사학위종별 또는 출신학과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③ 입학 자격 외 대학원 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3조(편입학) ① 대학원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전적 대학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② 대학원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각 학위과정의 지원 학과(또는 전공)·협동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의 편입학은 전적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이수학과와 취득학점에 따라 학기별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제104조(재입학) 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2절 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학점 및 수료

제10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석사	박사			
수업연한	2년 (논문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과정) 2년 6월 (무논문학위과정)	2년 (논문학위과정)	2년 6월 (논문학위과정, 무논문학위과정)	2년 (논문학위과정) 2년 6월 (무논문학위과정)	2년 (논문학위과정) 2년 6월 (무논문학위과정)
재학연한	4년	5년	5년	4년 5년(무논문학위과정)	4년 5년(무논문학위과정)

② 학·석사 연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사		석사	
수업연한	4년제(약학과 2+4년 포함)	3년 6월	1년 6월 (무논문학위과정 제외)	4년
	5년제(건축학과)	4년 6월		
	6년제(약학과)	5년 6월		
재학연한	4년제(약학과 2+4년제 포함) 10년 5년제(건축학과) 12년 6년제(약학과) 14년			8년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다.

다만, 무논문학위과정 대상자와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1. 석사·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2. 석·박사통합과정: 1년 이내

3.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MBA전공 : 1년 이내

⑤ 재입학자 및 수료 후 등록생의 수업(재학)연한은 전적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당 연한을 초과한 자는 학위과정별 수업(재학)연한에서 이수인정 학기를 제외한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대학원 편입학자의 수업(재학)연한은 이수인정 학기를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6조(교육과정) 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7조(수료학점) ①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24학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36학점	27학점 (무논문학위과정 33학점)	24학점 (무논문학위과정, 글로벌MBA전공 30학점)	24학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타 전공 출신자와 박사학위과정의 특수대학원 출신자 및 타 전공 출신자는 제1항의 수료학점 외에 소정의 보충과목 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보충하여 이수해야 할 학점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사	석사	
연계과정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과)의 총 졸업 소요학점에서 기타학점 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한다.	24학점(무논문학위과정30학점)	54학점

제108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매학기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추가이수학점 및 통과과목의 이수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석·박사통합 과정			
9학점 이내			9학점 이내	6학점 이내 (다만, 글로벌MBA 전공은 12학점 이내)	6학점 이내

②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학과장 및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타 전공 입학자와 박사학위과정의 특수대학원 출신자 및 타 전공 출신자는 보충과목 또는 추가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경영행정대학원의 수료 후 등록생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109조(타 대학원과의 교류 및 학점 인정) ① 국내 다른 대학원 및 외국 대학원

에서 이수한 학점은 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원에서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취득학점은 제1항에 준한다.

③ 타 대학원에 재적한 학생이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다.

제110조(재입학자 및 편입학자 학점)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동일 과정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의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1조(공동강의와 대체수강) ① 대학원은 학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석사학

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공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동일 학과 타 전공이나 타 학과(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하위 과정 포함)에서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학점까지 허용하며, 취득학점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변화하는 학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폭넓은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원에서는 집중강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2조(성적평가 및 재이수) ①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7등급으로 분류하며, C⁰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	95 ~ 100	4.5
A ⁰	90 ~ 94	4.0
B ⁺	85 ~ 89	3.5
B ⁰	80 ~ 84	3.0
C ⁺	75 ~ 79	2.5
C ⁰	70 ~ 74	2.0
F	69점이하	0

②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다.

제113조(수료인정 평점) 수료를 인정하는 성적은 전교과목의 평점평균이 석사학위과정은 3.0이상(다만, 교육대학원의 무논문 학위제는 3.5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5이상이어야 한다.

제114조(수료사정) 수료사정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하며 각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을 충족하더라도 통과과목,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가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15조(수료 후 등록)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무논문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6조(학위수여)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정해진 시험과 심사에 합격한 뒤 대학원위원회의 학위 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 제5호 내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 문화 향상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국가와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박사학위 종별은 제1항에 따르되, 이를 받은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④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6조의2(학위의 취소) ① 석·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학과 및 전공 변경

제117조(학과 및 전공 변경) 대학원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연구과정

제118조(연구과정 및 수료 후 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특수과목 또는 과제연구를 위한 연구과정과 대학원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한 수료 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정은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이 있는 자는 연구생과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연구생과 수료 후 연구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119조(학생지도)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20조(장학금 등) ① 대학원 학생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절 포상 및 징계

제121조(포상 및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또는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 및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절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122조(권리와 의무) ① 대학원 학생은 이 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학생의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에서 따로 정한다.

- ② 대학원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장 성과 환류 및 자체평가

제123조(성과 환류) ① 대학 내 교육 및 학생 지원, 산학 등 성과확산을 위한 성과 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대학의 정책 방향을 개선한다.

- ② 성과환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4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정보와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학칙개정 절차

제125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의 개정은 총장, 재적 5분의 1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교수평의회 의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학칙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정심의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의 대의기구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여 공포한다.

제8장 보칙

제126조(미래라이프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 미래라이프대학은 제 4장 (대학 학사운영)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 학칙은 199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본 학칙 시행이전의 목포대학 재적학생은 본 학칙에 의한 목포대학교의 해당학과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학칙 시행 당시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1992. 3. 1부터 생활과학대학 해당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상업교육과는 본 학칙 시행당시의 상업교육과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며, 상업교육과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복학당시 상업교육과에 해당 학년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경계열 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4. 본학칙 시행 당시에 제2학년 이상 재학생의 교과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93. 4. 2) 제2조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재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학부로 통합되는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는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0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중 제33조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이 학칙 시행일 이후 1997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복학,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모집단위로 통합되는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는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2학년도부

터는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1. 8.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2001. 8. 16)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제외)과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1일부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12호 및 13호, 제8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과 학부제도 도입에 따른 기타의 관련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및 대학원의 하부조직에 관한 경과 조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 지원을 위하여 국립학교설치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1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제1행정실, 제2행정실, 제3행정실, 제4행정실을 운영하며, 각 행정실별 대학·대학원의 행정지원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제1행정실 : 인문과학대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2. 제2행정실 :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경영행정대학원
3. 제3행정실 :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4. 제4행정실 : 공과대학, 산업기술대학원

제3조(외국어 및 전산영역의 학업인증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인증제도는 신입학생은 200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편입학생은 2003학년도 편입학생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4조(단과대학폐지와 학부제도의 시행에 따른 학생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은 2002년 3월 1일부터 별표6과 같이 종전의 소속에서 변경된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휴학생의 소속관리는 입학당시의 학과군 또는 학부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2002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군(학부)의 학과(전공)에 따라 별표6의 변경된 학부로 소속하되, 학부의 결정은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로서 이 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3. 3. 1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부(학과) 및 전공의

신설·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학전공 5년제 적용대상) 건축학전공 5년제 운영에 따른 제14조, 제42조, 제43조, 제57조 및 제64조에 관하여는 2002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학부·학과 및 전공의 명칭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부(학과) 및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3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학부(학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5. 27.)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3.)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 및 전공의 명칭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부 및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4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학부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5. 29.)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8.)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과 학부 및 전공의 명칭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학부(학과)·전공의 재적생은 2005년 3월 1일부터 종전의 소속에서 변경된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학부(학과) 및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5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학부(학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③ (외국어 및 전산영역의 학업인증평가 제도 폐지에 따른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학업인증평가제 폐지는 2005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④ (납입금 및 입학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5의 납입금 반환기준은 2004년 8

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7. 7.)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24.)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부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제가 5년제인 건축학전공은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6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③ (전공명칭 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6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 23.)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8.)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2.)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63조 단서에 관하여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3. 30.)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칙의 폐지) 본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목포대학교 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 ③ (단과대학 설치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학부·학과(구 목포대학교

학칙 제5조)에 재적중인 학생은 <별표1>과 같이 변경된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 23.)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 제2항,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및 별표9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에 컴퓨터교육과가 수학교육과로 전환됨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컴퓨터교육과 학생은 컴퓨터교육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2. 22.)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위중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8년 3월 1일 현재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재적생은 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에 행정학사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08. 6.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3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70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항의 규정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1.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2. 1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및 별표9의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수학교육과, 공과대학 전기제어 신소재공학부 디지털문화콘텐츠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줄

업할 때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생물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1학년도까지는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2학년도부터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미디어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약자원전공, 공과대학 기계선박해양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선박해양시스템전공 및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간협동과정(사이버금융보험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언론홍보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한약자원전공, 공과대학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조선공학전공 및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간협동과정(금융보험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09. 03. 16.)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1항, 별표1, 별표6, 의 개정학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 교육학과,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교육과, 공과대학 환경교육과, 컴퓨터교육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09년 4월 1일부터 사범대학 동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09. 04. 28.)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학과간협동과정(태양광시스템공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공과대학 신재생에너지공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학과간협동과정(신재생에너지공학)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부 칙 (2009. 07. 03.)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7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6, 별표9, 별표9-1 및 학부의 학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제 등의 시행에 따른 학생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2010년 3월 1일부터 별표6과 같이 종전의 소속에서 변경된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휴학생의 소속관리는 입학 당시의 학부(전공)에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2010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부의 전공에 따라 별표6의 변경된 학과로 소속하되, 학과의 결정은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정한다.

③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 신재생에너지공학부 제어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공과대학 제어로봇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수학전공, 공과대학 신재생에너지공학부 디지털문화콘텐츠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0년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각각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공과대학 디지털문화콘텐츠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학칙 시행 당시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생물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각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생명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학사조직 및 행정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본교의 제 규정에서 기획협력처를 기획처로, 기획협력처장을 기획처장으로, 기획홍보과를 기획평가과로, 기획홍보과장은 기획평가과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본교의 제 규정에서 학생지원처를 학생입학처로, 학생지원처장은 학생입학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본교의 제 규정에서 2010년 3월 1일부터 학부(전공)는

학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학부장은 삭제하고 학부의 전공주임교수는 학과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과과정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77조, 제78조, 제88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77조(이수학점), 제88조(수료학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2.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한 학생
3. 201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생

부 칙 (2010. 2. 26.)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1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7.)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1 의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6.)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제3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제111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1조 및 제113조는 2012년 신입학생부터, 제114조제3항은 2011학년도 후기 등록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0.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대학원 박사과정 화학교육학과를 화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제1항(교육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및 제113조제1항(산업기술대학원), 제114조제1항(교육대학원), 별표2(대학원, 교육대학원), 별표6, 별표7(대학원, 교육대학원)의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56조(외국인 학생)제1항 및 제3항은 201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학칙 제94조(졸업 및 학위) 제1항의 단서조항은 201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중국내 조선족 고교 졸업자로서 현지에서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취득한 자는 학칙 제56조(외국인 학생)제1항제1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④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따를 수 있다.
- ⑤ 제111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산업기술대학원)은 2012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⑥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 화학교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대학원 박사과정 화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 ⑦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은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1. 12. 30.)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8조제1항, 제88조 제1항의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77조, 제78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모집단위 간 이동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12. 6. 15.)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0.)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9.)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 ①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5호,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따라 임용된 전임강사는 이 개정학칙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 학칙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2013. 2. 28.)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 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각 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3. 8. 13.)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8조제1항, 제88조 제1항의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학칙 제6조의<별표2>, 제35조 제2항의<별표7>의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행정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당시 본교의 제 규정에서 ‘경리과’는 ‘재무과’로, ‘경리과장’은 ‘재무과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10 . 1.)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별표 2> 및 제35조 제2항의 <별표 7>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1.)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6조의<별표2>, 제35조 제2항의 <별표7>의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8.)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77조, 제78조 제1항, 제88조 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1.)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별표 2>,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의 <별표 7>, , 제108조제1항,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4항의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8호, 제83조제1항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8.)

이 학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4.)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제16호·제18호, 제6조, 제70조제1항·제2항·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6, 별표 7,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과 학생의 소속 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학과의 2016학년도 1학년 복학생, 2017학년도 1·2학년 복학생, 2018학년도 1·2·3학년 복학생 및 2019학년도 이후 모든 복학생의 소속 학과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2016학년도 복학생부터 2019학년도 이전 복학생에 한하여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로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폐지되는(원 소속) 학과	복학 후 소속 학과	비고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인류문화학과	
원예과학과, 해양수산자원학과, 한약자원학과, 식품영양학과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신소재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로봇공학과	전기 및 제어공학과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제3조(편입생의 국내외 다른 대학 취득학점 인정 적용례) 제8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6. 02. 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7의 경영행정대학원 관련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영행정대학원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 전공 재적생은 국제통상학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2016. 03.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8. 0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6, 별표 7,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고고인류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건축토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7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멀티미디어공학과 1학년 재학생은 융합소프트웨어학과나 멀티미디어공학과 중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2학년, 3학년 및 4학년 재학생은 멀티미디어공학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③ 2016학년도에 입학하여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멀티미디어공학과 1학년 재학생은 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④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에 복학하는 학생 중 IPP형 일학습병행제 전담학과와 관련이 없는 1학년과 2학년 학생은 융합소프트웨어학과나 멀티미디어공학과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3학년과 4학년 학생은 멀티미디어공학과에 복학할 수 있다. 또한 2021학년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학과를 학생들이 선택하여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2017. 9. 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가 정하는 재학연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인 학생: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 ②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1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1년을 추가한 기간
- ③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2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2년을 추가한 기간
- ④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3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3년을 추가한 기간
- ⑤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4개 학년 이상 미달한 학생: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4년을 추가한 기간

제3조(학과 명칭 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의류학과, 음악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09. 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70조, 제76조, 제78조, 제94조의 창의융합전공 개정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관광경영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경영학과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8. 01.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5. 0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과(트랙) 학생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학과(트랙)의 재적생은 2019년 3월 1일부터 별표 6에 따라 변경된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중전의 학칙에 의하여 트랙이 배정되지 않은 복학생은 통합학과에서 분리·신설된 학과를 결정하여 복학할 수 있다.

부 칙(2018. 06.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의 개정 학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99호, 2018. 10. 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03호, 2018. 11.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08호, 2019. 02.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이전부터 재적중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및 산업기술대학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9년 3월 4일부터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제1118호, 2019. 06.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22호, 2019. 07. 1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강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3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5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강사에게 적용한다.

부칙(제1139호, 2019. 09.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와 제88조1항의 건축학과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제1142호, 2019. 12.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7>의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9-1>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149호, 2019. 12. 11.)(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직위 명칭 일괄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61호, 2020. 02.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74호, 2020. 04.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제51조제3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 및 제113조의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질병 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질병휴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국제교류교육원장 등이 발행하는 확인서(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휴학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의한 휴학기간은 제4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1175호, 2020. 05. 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81호, 2020. 09.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부·학과(트랙) 학생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스마트운송기계·신소재공학부 및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원예생명과학트랙, 해양수산자원트랙, 한약자원트랙, 식품영양트랙)의 재적생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칙 <별표3>의 대학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에 변경된 학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트랙이 배정되지 않은 복학생은 통합학과에서 분리된 학과를 결정하여 복학할 수 있다.

폐지된 학부·학과(트랙)		복학 후 소속 학부·학과	
자연과학대학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원예생명과학트랙	자연과학대학	원예과학과
	해양수산자원트랙		해양수산자원학과
	한약자원트랙		식의약자원개발학과
	식품영양트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운송기계·신소재공학부	공과대학	기계·조선해양·신소재공학부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제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

에는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학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09호, 2021. 2. 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22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과 학생의 소속 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독일언어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21학년도 이후 문화콘텐츠학과 학생과 같은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문화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제1223호, 2021. 7.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31호, 2021. 11.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8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4> 및 <별표 6-2>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행정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행정대학원 사회적기업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사회적경제학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256호, 2022. 3.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와 제73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변경되는 학부·학과(트랙) 재적생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기

계·조선해양·신소재공학부,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생활과학부 재적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에 따라 변경된 학부·학과(트랙)의 해당 학년에 각각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공과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정보전자공학심화트랙) 및 전자·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공학심화트랙) 재적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각각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과 및 정보통신공학과와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학칙에 의하여 트랙이 배정되지 않은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정보전자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할 수 있다.

부 칙(제1259호, 2022. 5.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은 2022.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273호, 2022. 8. 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5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소요 이수학점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73조, 제86조의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입학자와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 편입학, 재입학, 모집단위 간 이동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졸업소요 이수학점이 145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조정된 학과(부)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하는 자는 졸업사정시 최초 복학시의 졸업소요 이수학점을 적용받고, 졸업소요 이수학점은 1학년은 130학점, 2학년은 136학점, 3학년은 139학점, 4학년은 142학점으로 한다.

부 칙(제1286호, 2023. 2.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99호, 2023. 4.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00호, 2023. 6. 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05호, 2023. 8.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9조제1항의 개정학칙 중 간호학과, 약학과의 모집단위간 이동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 학칙 공포 당시 다른 규정상 명칭이 “학생처” 으로 된 경우에는 “학생취업처” 로, “학생처장” 으로 된 경우에는 “학생취업처장” 으로, “학생부처장” 으로 된 경우에는 “학생취업부처장” 으로, “기획평가과” 으로 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 으로, “기획평가과장” 으로 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 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공포 당시 다른 규정상 용어가 “교과과정” 으로 된 경우에는 “교육과정” 으로 개정

부 칙(제1330호, 2023. 12. 18.)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구조개편 및 보직교수 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 제12조 · 제13조제2항 · <별표1>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대학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 제105조제1항 · 제107조제1항 · 제108조제1항의 산업대학원 명칭변경사항 및 <별표2> · <별표4>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수학점 및 수료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86조제1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학 · 석사연계과정 및 석 · 박사통합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학 · 석사연계과정 및 석 · 박사통합과정 진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지되는 학과 학생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단과대학 및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단, 개편된 학부(과)의 학생과 같은 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개편된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단과대학이 변경되는 간호학과 학생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344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학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연계·융합전공과정에 관한 적용례) 폐지되는 연계·융합전공과정을 202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신청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해당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부 칙(제1346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59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77호, 2024. 12.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79호, 2024. 12. 31.)

이 학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86호, 2025. 02.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소요 이수학점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 학칙은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 편입학, 재

입학, 모집단위 간 이동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1414호, 2025. 08. 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26학년도 통합대학 단과 대학 등에 두는 학부(과) 및 대학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30호, 2026. 01.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은 광주·전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에 따라 한시적('25. 4. 21. ~ '29. 4. 20.)으로 적용한다.

부 칙(제1435호, 2026. 02.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전남도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학칙 개정 전에 같은 학교로부터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전남도립대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전남도립대학교 학생에 대한 학사행정의 절차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국립목포대학교 학칙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립대학교 학생이 전남도립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으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개편된 국립목포대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부(과) 학생과 같은 학년에 복학재입학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개편된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전문학사 학위과정 개편 학부(과)	
전남도립대 (개편 전)	국립목포대 (개편 후)
산업안전융합학과	스마트해양에너지학부 (산업안전융합전공)
식품생명과학과	농수산식품학부 (식품생명전공)
신재생에너지전기과	스마트해양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기전공)
토목환경과(야)	토목환경과(야)
웰니스6차산업학과	농수산식품학부 (스마트농수산융합전공)
호텔조리제빵과	외식조리제빵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존속기간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남도립대학교 학생은 국립목포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목포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원 중 전임교원의 승진 임용 및 재임용(재계약)에 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2031년 2월 28일까지 종전 전남도립대학교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적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목포대학교의 교원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칙 제1414호(2025. 8. 8. 공포)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종전의 학과는 다음 표에 따라 학부 내 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대학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학과	학부	전공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음악공연기획과	음악공연기획학부	공연기획
미래라이프대학	레저스포츠지도학과	미래설계융합학부	레저스포츠지도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치료
	국제차문화학과		국제차문화
	회계세무학과		금융세무부동산
	스마트에너지학과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조선시스템학과		스마트조선시스템

② 종전의 학과 소속으로 재적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개편된 학부 학생과 같은 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개편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경영행정대학원 설치학과

과정	학과·협동과정	전공	비 고
석사	경영 학과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전자상거래학전공	
	행정 학과	행정학전공, 지적학전공	
	법 학과	법학전공	
	경제 학과	경제학전공, 글로벌MBA 전공	
	학과간협동과정	지역발전정책학협동과정, 사회적경제학협동과정	
	합계	4개학과(10개전공), 2개 협동과정	

<별표 4>

경영행정대학원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과정	학과·협동과정	전공	입학정원		비고
			도림캠퍼스	남악캠퍼스	
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전자상거래학전공	—	50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지적학전공			
	법학과	법학전공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글로벌MBA전공			
	학과간협동과정	지역발전정책학협동과정, 사회적경제학협동과정			
	합계	4개학과(10개전공), 2개 협동과정	50		

<별표 5>

등록금 반환기준

-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비 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7>

경영행정대학원 전공별 학위종별

구분	학 과	전 공	전문 학위명	비고
석사	경영학과	경영학 국제통상학 금융보험학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 전자상거래학	경영학석사(경영학) 경영학석사(국제통상학) 경영학석사(금융보험학) 경영학석사(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 경영학석사(전자상거래학)	
	행정학과	행정학 지적학	행정학석사(행정학) 행정학석사(지적학)	
	법 학 과	법 학	법학석사(법학)	
	경제학과	경제학 글로벌MBA	경제학석사(경제학) 경영학석사(경영학)	
	학과간협동과정	지역발전정책학 사회적경제학	지역정책학석사(지역발전정책학) 경영학석사(사회적경제학) 또는 경제학석사(사회적경제학)	

2.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정 2026. 0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산업정책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대학원위원회

제2조(조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학과(또는 전공) 및 협동과정(이하 “학과(또는 전공)”라 한다)에 주임교수와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둔다.

제3조(대학원위원회) ① 일반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학사 운영

제1절 입학 및 등록

제4조(입학자격) 대학원 입학자격은 학칙 제102조에 따르며, 비 동일계열 또는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입학자격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전형시기 및 방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며 매 학기 개시 전에 시행한다.

② 전형방법으로는 전형구분에 따라 서류심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필답고사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입학전형지침, 모집요강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편입학) ① 대학원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가 각 학위과정의 지원 학과(또는 전공)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또는 전공)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학기별 편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충과목은 일반대학원에만 적용한다.

1. 2학기 편입학: 1학기 이상 이수,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이상 취득
2. 3학기 편입학: 2학기 이상 이수,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상 취득
(대상자: 보충과목 3학점)
3. 4학기 편입학: 3학기 이상 이수,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취득
(대상자: 보충과목 6학점)

③ 제2항의 편입학 대상자의 이수학기 및 이수학점 인정 여부는 소관학과(또는 전공)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8조(재입학) 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자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수학점 인정 여부는 소관 학과(또는 전공)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③ 학위과정 별 수업(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다음 각 호를 이수학기로 인정하여 수업(재학)연한을 산출한다.

1. 석사과정 : 학기당 6학점 이상 취득
2. 박사과정 : 학기당 9학점 이상 취득

④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학·석사연계과정 선발) ① 매학기 개시 전 당해 학년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학·석사연계과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과정의 일반학과 5학기(3학년 1학기) 또는 6학기(3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총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만, 법학과나 사범대학, 공과대학 소속 학과는 88학점(컴퓨터

공학과 90학점, 약학과 107학점, 건축학과는 7학기 이수자로 12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소속 학과의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③ 학·석사연계과정 최종 선발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조(등록) ①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2절 교육

제11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의 구분 없이 통합하여 편성하되, 과정별 수준 및 이수 소요학점을 확보하여 편성 후, 대학원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의 정기개편은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수시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교과목 개설) ① 각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는 매 학기 개설교과목을 학기 개시 4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학기 개시 2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수가 각 대학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의 학점 수는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과정 3인 이상, 박사과정 2인 이상일 경우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기준인원 이하로 개설할 수 있다.

④ 1개의 개설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원이 분담하여 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관교수 1인을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설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강의계획서에는 주별 강의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13조(교과목 이수) ① 교과목 이수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복학자 등의 교과목 이수는 복학시점 소속학과(또는 전공) 학생들이 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

② 교과목은 각 대학원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전공공통, 전공선택, 통과, 보충

2. 전문대학원: 전공공통, 전공선택, 통과

3. 교육대학원: 공통필수, 전공(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통과

4. 경영행정대학원: 전공, 통과

5. 산업대학원: 전공

③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또는 전공)에서 지정한 대체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일반대학원의 타 전공 출신자는 학과 교육과정에서 정한 보충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위과정에서 동일·유사 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각 대학원 과정별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구분	전공공통	전공선택	통과	보충
석사	9학점 이내	15~24학점	이수	9학점 이상
박사	12학점 이내	24~36학점	이수	9학점 이상
석·박사통합	12학점 이내	42~54학점	이수	9학점 이상

2. 전문대학원

구분	전공공통	전공선택	통과
석사	9학점 이내	15~24학점	이수
박사	12학점 이내	24~36학점	이수
석·박사통합	12학점 이내	42~54학점	이수

3. 교육대학원: 공통필수 및 전공 포함 최저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으며, 통과

4. 경영행정대학원: 전공 24~30학점, 통과

5. 산업대학원: 전공 24~30학점

⑥ 논문 또는 논문대체 학위과정자는 각 대학원 및 학과(또는 전공)에서 지정하는 통과과목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무논문 학위과정자는 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다.

제14조(교직과정의 이수) ① 교육대학원에서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입학 후 첫 학기 초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별지2>를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과정을 신청한 학생은 표시과목에 관련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영역별 취득학점은 별표2와 같다.

2. 학부에서 이수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또는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하고, 교직과목 인정은 재학 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한다.

3.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이 교직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교직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4. 교원자격증 소지자(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자격증 소지자, 양호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교직과목 미이수자는 제외)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지침에 의해 교직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 소지자라도 교과교육영역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습은 학교현장 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하되, 이수기준, 이수기간, 이수방법, 소요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 중 교육대학원 교과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석사과정 수업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
3.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교직과목으로 한다.
4. 선수과목의 이수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인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부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초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별지3>을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표시과목 관련 전공에서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15조(강의 담당 교원) ① 대학원의 강의, 실험 및 실기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후 임용된 자

②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강사 위촉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기 개시 전에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설 교과목을 담당할 전임교원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2. 개설 교과목을 담당할 전임교원이 질병, 국내외 파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학과(또는 전공)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지정된 기간 내에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이내 복학하는 학생의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기당 이수학점은 학과(또는 전공) 내규에 따르되, 학칙에서 정한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9학점 이내
 2.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6학점 이내(단, 글로벌MBA 전공은 12학점 이내)

제17조(출결석) ① 출석부는 교과 담당교원이 관리하며, 출결 상황은 매 시간 담당교원이 확인해야 한다.

- ② 학기 중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1.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내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3. 병무관계로 결석하는 경우
 4.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15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토요일·공휴일은 위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5. 그 밖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학생은 소속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결석계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휴보강)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휴강 또는 결강을 하는 경우 보강 또는 대강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학기에 보강 또는 대강을 실시한다.

②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는 보강 또는 대강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교외교육)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업체·현장 등에서 교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는 교외교육 종료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학업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은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원이 정하여 강의계획서에 명기하고 매학기 초 이를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통과과목과 보충과목은 총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않으며, 통과과목의 성적 평가는 통과는 “Pa”, 미통과는 “F”로 성적을 부여한다.

③ 교과목 담당 교원은 수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수강 학생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학생은 부여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교과목 담당 교원은 제3항의 성적확인이 끝난 후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적 확인부 등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절 주임교수·지도교수

제21조(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역할)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학과(또는 전공)의 전반적인 학사를 관장하고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학점 취득,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2조(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①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1인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과(또는 전공) 내규로 정한다.

- ③ 지도교수는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타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4절 수료

제23조(수료 인정) ① 학칙에서 정한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통과과목 및 보충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단축 수료)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수업 연한 단축 수료대상자는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 ② 수업 연한을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 박사과정은 3학기차, 석·박사통합과정은 6, 7학기차 재학생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MBA전공의 단축 수료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재학생의 5%가 1명 미만인 경우 단축수료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 ③ 단축 수료에 관한 최종 허가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절 학과(또는 전공) 변경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과정 변경

제25조(학과(또는 전공)의 변경) ① 학과(또는 전공)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 4주 전까지 <별지1>의 학과(전공)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과(또는 전공)를 변경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의 인정 여부는 변경한 학과(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학과(또는 전공)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③ 학과(또는 전공)를 변경한 학생은 제13조 제5항에 명시된 타전공 출신자의 보충과목 이수 규정에 따라서 보충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제26조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 ① 통합과정으로의 변경인원은 박사과정 정 정원 결원(미충원, 제적, 자퇴)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② 변경 신청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이 동일 명칭으로 각각 설치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학과(또는 전공) 및 협동과정에 한해서 가능하며 변경 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 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1. 석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을 마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수료자는 제외)
 2. 소속 학과(또는 전공) 내규를 충족하는 자
- ④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고,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4장 학위 수여

제27조 (학위 수여) 각 과정별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청구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학칙에서 정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체 실적을 완수하거나 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에게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 (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다음표에 제시된 시기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수료대상자	단축수료대상자
석사과정	3학기 초	2학기 초
박사과정	3학기 초	2학기 초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 초	6학기 초

- ② 생명윤리 심의대상이 되는 학위청구논문의 실험은 국립목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학위청구 자격시험) ① 학위청구 자격시험은 매 학기 초 전공 종합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전공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과목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응시자격	과목수	합격 기준
일반대학원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석사 3과목 이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지역산업정책 전문대학원		박사, 석·박사통합 4과목 이상	
교육대학원		전공 3과목 이상+교직 1과목	
경영행정대학원		전공 3과목 이상	
산업대학원		전공 3과목 이상	

③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응시하거나 그 과목을 소관 학과(또는 전공)의 결정으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30조 (학위청구 자격시험의 특례) ① 편입학자와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한 자의 편입학 전 또는 과정 변경 전에 합격한 교과목은 학과(또는 전공) 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위원 등은 학과(또는 전공) 내규로 정한다.

③ 기타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계획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 (논문 심사) ① 연구계획서 승인을 득하고 제29조에 따른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를 운영하는 학과(또는 전공)에 소속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과(또는 전공) 주임교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위촉)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32조(무논문학위청구) ① 무논문학위청구는 무논문학위제도를 운영하는 학과(또는 전공)에 한한다.

② 제26조에 의거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 추가 이수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일반대학원, 지역산업정책전문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은 30학점 이상 취득, 교육대학원은 3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무논문 석사학위청구 희망자는 3학기 초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승인 학기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여 6학점을 추가 이수 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⑤ 무논문 학위청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33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는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 명예박사학위 추천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해당 대학장 및 학과장(주임 교수),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4~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440호, 2026. 0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무규정」,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무규정」, 「국립목포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규정」,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목포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목포대학교 학칙」,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별표 1>

이수과정별 최저이수학점(제13조제5항3 관련)

(단위: 학점)

과 정		교과과정	공통필수	전공과목		계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석사 과정	교과교육 영역		6	9	12 (무논문: 18)	27 (무논문: 33)
	(부전공)		3	6	24	33
	비교과교육 영역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지도상담교육전공		3	6	18 (무논문 24)	27 (무논문: 33)
	상담교육전공		3	6	24	33
	영양교육전공		6	6	21	33
연구생과정			6	6	-	12

※ 전공과목에 기본이수과목 5과목(정보·컴퓨터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7과목) 포함

<별표 2>

교직과목 이수학점(제14조제2항 관련)

전 공 과 목	교 직 과 목			비 고
	영역	이수학점	교과목명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9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론(3학점) -교과논리및논술(3학점)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	-교육학개론(2) -교육심리(2) -교육사회(2) -교육철학및교육사(2) -교육과정(2) -교육평가(2) -교육행정및교육경영(2) -교육방법및교육공학(2)	※전공의 경우 학부이수과목 30학점 포함 ※출입학생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전체평균성적 75/100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 교과목 평균폭점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폭점 75점 이상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2) -특수교육학개론(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2)	
	계	22학점 이상		

<별지 1>

학과(전공) 변경원

소속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공
성명	(한자)	학번		
현학과(전공)				
변경학과(전공)				

위와 같이 학과(전공)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청자 (인)

위 변경 사항을 확인함.

현 주임교수 (인)
변경 주임교수 (인)

국립목포대학교○○대학원장 귀하

<별지 2>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소속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공
성명	(한자)	학번		
주소		생년월일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 1. 교육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 2.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그 외 교육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공 주임교수 (인)

국립목포대학교교육대학원장 귀하

<별지 3>

부전공 이수신청서

소 속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공
성 명	(한자)		학 번	
주 소			생년월일	
출 신 대 학 및 학 과				
현재 소지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근 무 학 교			직급(위)	

- ※ 부전공 신청자격 : 중등학교 현직교사
- ※ 부전공 자격 취득요건 : 전공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과 교직(교과 교육영역) 9학점(3과목)을 반드시 이수.

위와 같이 부전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공 주임교수 (인)

국립목포대학교교육대학원장 귀하

3. 경영행정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심사 및 작성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4. 3.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7조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의 작성 및 제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지도교수 선정) ① 논문 지도교수는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무규정」 제20조에 따른 지도교수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행정대학원장(이하 “이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논문 지도교수는 교내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이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교외 인사로서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논문 지도교수의 역할) 논문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이 논문 제목 등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거나, 타인의 논문을 도용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지도위원회)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지도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와 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논문연구계획서) 학위청구 논문제출 예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거쳐 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논문 제출자격)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이전에 수료하였거나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2. 논문연구 과목 통과(예정)자
3. 학위청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제8조(학위청구 논문제출)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하 “논문심사자”라 한다)은 심사료와 심사용 청구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①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자가 있는 경우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분야의 교외 권위자 중에서 3인 이상의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이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이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논문 심사위원을 확정 및 위촉하고,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를 주관하게 한다. 단, 논문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논문심사를 시작한 후에는 논문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논문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논문 심사 구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제11조(예비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심사자는 예비심사용 논문을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복사하여 학과(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① 논문 예비심사는 각 학과(전공)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자는 각 학과(전공)별 논문심사 내규 등에 따라 공개 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의 본심사) ① 논문심사자는 예비심사가 끝난 논문을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복사하여 3부 이상을 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 논문의 본심사는 이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주제, 연구 방법, 내용, 연구 성과 등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심사한다.

④ 논문 심사위원은 학위청구 논문 심사에 필요한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 등을 논문심사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본심사는 지적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여부를 판별하여 논문심사 통과 가부를 판정한다.

제14조(논문 유사도 검사 실시) 논문심사자는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Copykiller 등)의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본심사에 활용하고, 논문심사 종료 후에 유사도 검사 실시 결과를 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논문심사 횟수)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합격 판정) 학위청구 논문심사의 합격 판정은 논문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 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심사자는 학위청구 논문 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논문 본심사와 병행 또는 논문심사 종료 후에 행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에 연관된 광범하고 전문적 지식 및 학위 수여자로서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행한다.
 ③ 구술시험의 합격 판정은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논문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1학기 경과한 후에 재차 구술시험을 과할 수 있다. 재시험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의 합격 판정이 취소된다.

제19조(논문심사 결과 보고) 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학위논문 파일 등재) 논문심사 통과자는 학위논문관리시스템(dCollection)에 심사위원의 날인이 되어있는 최종 학위논문 파일을 소정의 기간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학위논문의 제출)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날인이 되어있는 최종 학위논문 인쇄본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학위청구 논문 작성) 학위청구 논문작성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하되, 작성 순서에 의하여 제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의 순서를 바꾸어 제책한다.

1. 규격은 A4(210×297mm)로 하며, 지질 80g 이상 백색모조지로 인쇄한다.
2. 작성순서
 - 1) 표지 : 양식1(표지 상단에는 심사본은 학위청구논문으로, 최종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기재해야 함), 양식6

- 2) 내표지I : 양식1, 양식6
 - 3) 내표지II : 양식2, 양식7
 - 4) 목차
 - 5) 국문초록 : 양식4
 - 6) 본문
 - 7) 참고문헌(References)
 - 8) 영문 초록(Abstract) : 양식5
 - 9) 부록
3. 본문 인쇄 (본 인쇄 규격은 한글hwp 기준이며, MS Word 활용 가능)
- 1) 글꼴
 - 논문전체 - 명조, 신명조, 휴먼명조, 바탕 중 택 1
 - 논문제목 - HY견명조
 - 2) 글자크기 : 1단으로 하고 11pt로 인쇄한다.(각주는 9pt로 함)
 - 3) 줄간격 : 200 %
 - 4) 용지 여백(단 표지는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같게 한다.)
 - 위 쪽 : 35 • 머리말 : 0
 - 왼 쪽 : 35 • 오른쪽 : 30
 - 아래쪽 : 25 • 꼬리말 : 15
 - 5) 제목 번호를 기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입한다.
 - 국문 : 1. 가. 1) 가) (1) (가)
 - 영문 : 1. A. 1) a) (1) (a)
 - 6) 사진은 원본의 색이 유지되도록 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책한다.
 - 7) 인쇄가 완료되면 논문심사위원의 최종 논문 인준 날인을 받아 제본한다.
(국문논문은 심사위원 인준 날인에 도장, 영문논문은 사인으로 한다.)
 - 8) 위 각 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학위 논문체제에 따른 인쇄 방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제출자	과정		학과	
	학번		성명	
지도교수	학과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표절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확인자 : 지도교수 (인)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대 상 자	과정		학과	
	학번		성명	
지도교수	학과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논문심사결과 (합격여부)				
구술시험결과 (합격여부)				
심사요지				

상기와 같이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위 원 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지도교수)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귀하

양식 1) 학위논문 표지 및 내표지 I

↕ 4.5cm			
	○○학 석사학위논문		14pt
↕ 1.5cm			
	논문제목(HY견명조)		26pt
↕ 3cm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6pt
↕ 0.5cm			
	○ ○ 학과 ○ ○ 전공		16pt
↕ 1.5cm			
	성 명		16pt
	20 년 월		16pt
↕ 4cm			

※ 위의 규격에 맞춰서 책자형 논문 표지를 작성해 주시고,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아래의 여백은 되도록 지켜야 하며 제목의 길이에 따라 글자 크기는 조절 가능함)

양식 2) 내표지 II

		↕ 4cm	
	논문제목(HY전명조)		26pt
		↕ 2cm	
이 논문을 ○○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학과 ○ ○ 전공			
홍 길 동			
지도교수 ○ ○ ○			
홍길동의 ○○학 석사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16pt
↑ 출 간 격 220 % ↓	심사위원장	○○○ (인)	
	심 사 위 원	○○○ (인)	
	심 사 위 원	○○○ (인)	
	20 년 월		16pt
		↕ 4cm	

양식 3) 배면(背面)

↕ 3cm

제
목
(부제
포함)

↕ 1.5cm

성
명

↕ 3cm

2
0

년

월

↕ 3cm

양식 4) 국문초록

↕ 3.5cm

..... 관하여.. 16p

t

↕ 1.5cm

성 명 16p

t

↕ 1cm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과 11p

○○전공 t

(지도교수 : ○○○)

↕ 1.5cm

(초록)

..... 11pt

양식 5) 영문초록

↕ 3.5cm

..... 16pt

↕ 1.5cm

Name 16p

t

↕ 1cm

Department name Major name 11p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

↕ 1.5cm

(Abstract)

..... 11pt

※ 영문학과명은 경영행정대학원 표준 학과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Master's Thesis

Title

Department name Major nam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Hong Gildong

February 2000

양식 7) 영문 내표지 II

Title

Department name Major name
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Hong Gildong

Supervised by Professor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Master of 영문 학위명) in (영문 전공명).

Committee in Charge :

Kim ○○ (사 인) _____

Kang ○○ _____

Park ○○ _____

February 2000

양식 8) 영문 배면

Title	Hong Gildong	February 2020
-------	--------------	---------------

<별표1>

석사 전문학위 종별

학 과	전 공	학 위
경영학과	경영학 국제통상학 금융보험학 관광·호텔·외식 서비스경영학 전자상거래학	경영학석사(경영학) 경영학석사(국제통상학) 경영학석사(금융보험학) 경영학석사(관광·호텔·외식 서비스경영학) 경영학석사(전자상거래학)
행정학과	행정학 지적학	행정학석사(행정학) 행정학석사(지적학)
법 학 과	법 학	법학석사(법학)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석사(경제학)
학과간협동과정	지역발전정책학 사회적경제학	지역정책학석사(지역발전정책학) 경영학석사(사회적경제학) 또는 경제학석사(사회적경제학)

<별지 서식1> 논문학위제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학 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학 위 (인)

학위번호 : 국립목포대(석) -

<별지 서식2> 무논문학위제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학 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학 위 (인)

학위번호 : 국립목포대(석) -

4.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 운영규정

제정 2020. 10.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대학교 학칙 제55조에 의하여 이 지역 경영자 및 관리자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지식경영 능력을 개발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영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개설하는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개강좌의 명칭은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 운영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생 전형에 관한 사항
2. 등록금 징수액 책정
3. 최고경영자과정 공개강좌 운영에 따른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모집과 전형

제6조(모집인원) 이 과정의 모집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 자격) 이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및 공사 기업체의 간부·임직원
2.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중견 공무원 및 각 군의 장교
3. 각급 의회 의원, 정당·사회단체의 간부
4.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자영 사업가
5. 기타 원장이 이 과정의 수강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서류)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전형방법) 이 과정의 전형은 서류 전형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등록·등록금 반환·수강 기간 및 강의·교육과정·출석·휴학

제10조(등록) 이 과정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은 국립목포대학교 학칙 제39조에 따른다.

제12조(수강 기간 및 강의) ① 이 과정의 수강 기간은 1년으로 하며, 2개 학기로 구분한다.

- ② 1개 학기의 수강 기간은 13주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개강은 3월과 9월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④ 이 과정의 수업은 야간에 주 1회 2시간으로 하되, 학내·외 전문가의 특강과 특별활동으로 진행한다.

제1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출석) 공무상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사전·사후에 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8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회에 한하며 휴학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 보고서 · 수료 및 증명서 발급

제16조(연구 보고서) ① 수강생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 연구 분야 및 주제는 수강생이 선정하여 원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제17조(수료의 인정) ①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은 과정의 이수율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 출석 일수에 미달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수료를 유보하며 다음 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다.

제18조(증명서 발급) 수강생 및 수료(예정)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상훈 및 징계

제19조(포상) 수강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우회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2. 우수 연구 보고서 작성자
3. 재학 기간 중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
4. 재학 중 출석 상황이 우수한 자
5. 본 과정 또는 국립목포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

제20조(징계) 수강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수강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2. 학사운영이나 자치활동에 지장이 초래하는 자

3. 출석 미달을 이유로 1개 학기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제7장 자치활동

제21조(자치활동) ①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우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재정과 운영

제22조(재정) 이 과정의 재정은 등록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예산운용) ① 등록금은 대학원 원생 납입금의 한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국립목포대학교 대학 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24조(강의료 및 교재연구비 등) ① 이 과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 교재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2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대학교 학칙과 경영행정대학원 교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189호, 2020. 10. 16.)

이 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89호, 2020. 10. 16.)

이 제정 규정은 2023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 서식)

경대원 제 호

수 료 중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이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총장(학위) ○○○ (인)

(제18조 별지 제2호서식)

경대원 제 호

수 강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과 정 명

수 강 기 간

학적 원부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학위) ○○○ (인)

대
조
자

* 대조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제18조 별지 제3호 서식)

경대원 제 호
수 료 (예정)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과 정 명
수 강 기 간
학적 원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학위) ○○○ (인)
대 조 자

* 대조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IV

학과(전공)

1. 경영학과

가. 경영학 전공

나. 국제통상학 전공

다. 금융보험학 전공

라.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 전공

마. 전자상거래학 전공

2. 행정학과

가. 행정학 전공

나. 지적학 전공

3. 법학과

4. 경제학과

가. 경제학 전공

나. 글로벌MBA 전공

5. 학과간협동과정

가. 지역발전정책학 전공

나. 사회적경제학 전공

1. 경영학과(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가. 경영학전공(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 학과 사무실 : 사회과학관 4159호 TEL: 450-2610
- 수여 학위명 : 경영학석사(경영학)

1. 교육목표

- 정보화 및 세계화를 선도하는 경영자 및 벤처경영인 육성
- 경영분야와 경영정보 분야의 학문적인 이론체계 확립
- 경영이론 및 실무교육에 의한 다양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수요자 중심의 인재양성

2. 연혁 및 특징

- 본 경영학과는 경영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문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설립인가를 받아, 1988년 3월 1일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석사과정 140명을 배출 하였으며, 2016년 2월 현재 석사과정 25명이 재적 중이다.
- 자본주의 경제의 중심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조직의 경영에 관한 고급수준의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기업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인사, 조직, 재무, 생산, 마케팅, 회계학, MIS 등의 분야별로 전문화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자, 연구가, 컨설트로 진출하거나 산업현장의 전문 관리자로 진출하는데 유용하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윤철호	교수	경영학박사 (광운대)	MIS	450-2611 (carlyoon@empal.com)
이창대	교수	경영학박사 (서강대)	회계학	450-2612 (leecdai@mnu.ac.kr)
김기범	부교수	경영학박사 (서강대)	회계학	450-2619 (kibum2005@hanmail.net)
강민정	교수	경영학박사 (서울대)	마케팅	450-2613 (7minjeong@hanmail.net)
우형록	조교수	경영학박사 (한양대)	인사조직	450-2614 (hrwoo@mnu.ac.kr)
이한근	조교수	경영학박사 (연세대)	마케팅	450-2615 (hglee1007@mnu.ac.kr)
최수정	부교수	경영학박사 (전남대)	MIS	450-2651 (mischoisj@mnu.ac.kr)
홍남선	명예교수	경영학석사 (원광대)	조직행동	450-2617 (hongnamson@yahoo.co.kr)
조현상	명예교수	경영학박사 (조선대)	재무투자	450-2618 (buscho@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K601	조직행동특론(Topics in Organizational Behavior)	3
	OK603	경영정보특론(Topics in Management Information)	3
	OK604	생산및서비스관리특론(Topics in Production and Operations anagement)	3
	OK605	마케팅특론(Topics in Marketing)	3
	OK606	재무관리특론(Topics in Financial Management)	3
	OK607	문화산업경영세미나(Seminar in Culture Industry Management)	3
	OK608	관리회계특론(Topics in Management Accounting)	3
	OK610	인적자원관리세미나(Seminar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3
	OK611	노사관계론세미나(Seminar in Industrial Relations)	3
	OK616	경영과학특론(Topics in Management Science)	3
	OK621	경영학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for Business)	3
	OK623	증권시장세미나(Seminar in Capital Markets)	3
	OK624	투자론세미나(Seminar in Investment Theory)	3
	OK625	소비자행동론 연구(Study in Consumer Behavior)	3
	OK626	마케팅전략연구(Study in Marketing Strategy)	3
	OK627	국제마케팅연구(Study in International Marketing)	3
	OK628	인터넷마케팅연구(Study in Internet Marketing)	3
	OK629	회계정보의 활용 연구(Studies in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3
	OK630	경제활동과 세금 세미나(Seminar in Economic Activities and Taxation)	3
	OK631	원가회계 연구(Study on Cost Accounting)	3
	OK632	기술경영세미나(Seminar in Management Technology)	3
	OK633	경영시뮬레이션 세미나 (Seminar in Business Simulation)	3
	OK634	기업실무와빅데이터(Business Practice and Big Data)	3
연구과목	OK620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K601 조직행동특론 (Topics in Organizational Behavior)

행정현상 일반에 대한 이해에 주안점을 두며, 그 내용은 행정 현상의 설명, 이해에 중심이 되는 개념들과 이 개념들의 관계로 구성된다.

● OK603 경영정보특론 (Topics in Management Information)

조직이론의 일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조직행태론과 조직 구조 설계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 OK604 생산및서비스관리특론 (Topics i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인사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대 인사행정의 실제 및 기본적 이론을 고찰한다. 공무원의 조직자로서의 지위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아울러 연구한다.

● OK605 마케팅특론 (Topics in Marketing)

예산의 기능, 예산제도의 발달, 자원배분, 예산과 국민경제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OK606 재무관리특론 (Topics in Financial Management)

정책연구의 과정론적 입장에서 정책학의 기본적인 지식체계 및 정책의 제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상의 제반 이론 및 요인들을 연구, 검토한다

● OK607 문화산업경영세미나 (Seminar in culture Industry Management)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경향과 분석 및 평가방법론을 중심으로 다룬다

● OK608 관리회계특론 (Topics in Management Accounting)

지방행정의 의의, 기능,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역할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 OK610 인적자원관리세미나 (Seminar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국가의 기능 속에서 차지하는 도시의 고유기능을 파악하고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도시행정의 고유영역을 식별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이용 가능한 기법을 소개한다. 도시개발, 도시빈곤, 환경, 주택, 교통 등이 이에 포함되어 강의한다.

● OK611 노사관계론세미나 (Seminar in Industrial Relations)

복지이념과 복지지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주요국가의 복지정책을 비교·연구하는데 강의의 초점을 둔다.

● OK616 경영과학특론 (Topics in Management Science)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공공성과 기업성에 입각하여 고찰함으로써 공공기업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의 공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공기업, 한국의 공기업 등을 비교·고찰한다.

● OK621 경영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for Business)

통계학 접근방법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한다.

● OK623 증권시장세미나 (Seminar in Capital Markets)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증권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증권시장은 오늘날 가계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한편 증권시장은 일반경제의 척도로 나타나 있는 만큼,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의 매커니즘과 투자 이론 및 실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 OK624 투자론세미나 (Seminar in Investment Theory)

증권시장은 오늘날 가계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한편 증권시장은 일반 투자의사결정, 자본시장의 가격결정에 관련한 내용의 이론과 함께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까지를 검토한다.

● OK625 소비자행동론연구(Study in Consumer Behavior)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평가, 선택, 구매 및 소비해가는 과정에서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좌는 소비자행동의 주요 영역인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 정보처리과정, 태도의 형성 및 변화, 학습,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에 대해 학습하고 최신 시장 트렌드로서 감정적소비,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이슈에도 접근해본다.

● OK626 마케팅전략연구(Study in Marketing Strategy)

한 기업이 마케팅전략을 통하여 어떻게 성공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도록 돕는다. 주요 내용은 기회분석, 마케팅전략 기획, 인터넷 마케팅을 위한 4P 분석을 포함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기업이든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OK627 국제마케팅연구(Study in International Marketing)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기술 혁신적 기업만이 치열한 국제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마케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복잡성은 마케팅 환경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기인하므로 마케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국제마케팅환경에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 OK628 인터넷마케팅연구(Study in Internet Marketing)

인터넷마케팅연구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마케팅전략 분야의 연구논문들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과정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활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OK629 회계정보의 활용 연구(Studies in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존의 회계연구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이는 실제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 회계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회계연구는 전무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회계정보 수요자는 회계정보의 활용과 이해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겪었으며, 교육컨텐츠 또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본 수강과목은 회계정보를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토론 형식으로 풀어나감을 지향한다.

● OK630 경제활동과 세금 세미나(Seminar in Economic Activities and Taxation)

IT(정보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금 신고·납부와 징수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가령, 과거에는 3~4천 명의 세금 관련 업무를 10명의 전담직원이 담당했지만 지금은 단 1명의 전담직원 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잡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산식을 몰라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클테면 홈텍스)이 요구하는 간단한 숫자만 입력해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세금과 회계연구는 이러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현상을 반영한 최신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감 있는 사례를 다룸으로써 세금 및 회계와 관련된 어려운 이론들을 보다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은 구성된다.

● OK631 원가회계 연구(Study on Cost Accounting)

전통적인 원가계산방법과 원가회계 분야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최근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원가회계 분야 논문작성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할 수 있다.

● OK632 기술경영세미나(Seminar in Management Technology)

기술경영, 기술혁신경영, 과학기술정책 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며, 기술경영 분야의 연구추세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사례에 대해 토론한다.

● OK633 경영시뮬레이션 세미나(Seminar in Business Simulation)

경영시뮬레이션 세미나를 통하여 기업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가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역할을 체험하면서 경영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창출 및 경영 의사결정 능력과 경영분석능력을 성찰하고 향상하는데 있어 본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OK634 기업실무와 빅데이터(Business Practice and Big Data)

기업실무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 사례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다룬다.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개념 및 최근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 도구인 R을 활용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나. 국제통상학전공(Major in International Trade)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4188호 TEL: 450-2620
- 수여 학위명: 경영학석사(국제통상학)

1. 교육목표

- 발전하는 학문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 및 응용능력의 배양
- 무역분야의 전문 인력으로서 학문과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 전공분야를 세분화하여 심도있는 지도를 통한 지적능력의 향상

2. 연혁 및 특성

- 1991년 3월 석사과정 개설
- 본 학과는 국제무역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대외적인 통상현안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역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 2016년 2월 전공 명칭변경 (무역학 -> 국제통상학)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유병욱	교 수	경영학박사 (성균관대)	무역상무	450-2621 (buyou@mnu.ac.kr)
유 천	부교수	경영학박사 (경희대)	무역경영	450-2622 (yu1000@mnu.ac.kr)
조우성	부교수	경영학박사 (동국대)	국제경제학	450-2623 (threeonthree@mnu.ac.kr)
마일환	조교수	경영학박사 (경희대)	국제경영	450-2624 (ma.ilhwan@mnu.ac.kr)
모수원	명예교수	경제학박사 (전북대)	국제경제	450-2620 (moswan@hanmail.net)
박석호	명예교수	경영학박사 (전남대)	국제경영	450-2620 (shpark@mnu.ac.kr)
최동오	명예교수	경영학박사 (목포대)	전자무역	450-2625 (blue@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L601	국제무역학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3
	OL602	전자무역특론(Topics in Cyber Trade)	3
	OL603	무역정책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	3
	OL604	국제금융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3
	OL605	국제교통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3
	OL606	전자상거래특론(Topics in Electronic Commerce)	3
	OL607	글로벌마케팅특론(Topics in Global Marketing)	3
	OL608	국제무역환경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3
	OL609	글로벌경영학특론(Topics in Global Business)	3
	OL610	무역관습론특론(Topics in Trade Custom)	3
	OL611	한국무역론특론(Topics in Korean Trade)	3
	OL612	선하증권특론 (Topics in Bill of Lading)	3
	OL613	무역영어특론(Topics in English International Trade)	3
	OL614	인터넷비즈니스특론(Topics in Internet Business)	3
	OL617	국제통상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Commerce)	3
	OL618	경제통합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3
	OL620	국제물류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Logistics and CMS)	3
	OL621	국제비즈니스계약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3
	OL622	무역결제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Paymnets)	3
	OL623	계량경제학특론(Topics in Econometrics)	3
	OL624	글로벌기업특론(Topics in Global Enterprise)	3
연구과목	OL619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L601 국제무역학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경제거래의 실물적, 화폐적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목으로서 무역의 순수이론, 무역과 경제성장, 무역정책, 국제수지, 국제금융제도, 남북문제를 차례로 다룬다.

● OL602 전자무역특론 (Topics in e-Trade)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업무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내용을 강의하여 대학원생들이 전자무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무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 기본개념, 유망품목 선정, 수출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및 선정, 수출마케팅전략과 실제, 전자무역실무 등을 연구한다.

● OL603 무역정책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

무역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정책의 목표설정과 무역정책수단의 효과 분석문제를 다룬다. 무역이익, 관세정책과 비관세 정책수단의 효과분석, 국제기구의 역할,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정책, 관세동맹, 직접투자정책 등이 주요 강의 내용이다.

● OL604 국제금융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국제무역의 실물적인 거래를 뒷받침한 화폐적인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과목으로 국제수지, 외환시장, 국제시장 조정수단으로서의 환율조정, 소득조정, 그리고 자본이동 등을 다루고 국제금융시장과 국제금융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다.

● OL605 국제교통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컨테이너의 상업적 이용과 보험, 금융제도의 고도화에 따른 육·해·공 복합 운송제도의 발달에 부응하여, 복합운송계약의 이론과 실무·계약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복합운송 증권의 개념과 약관·국제규칙·운송사례와 클레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OL606 전자상거래특론 (Topics in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인터넷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이론적·실제적 기본원리와 그 문제점·대안·향후과제 등을 연구한다.

● OL607 글로벌마케팅특론 (Topics in Global Marketing)

먼저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된 개념과 정책 분야를 살펴보고,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글로벌 마케팅 환경과 글로벌마케팅 활동의 계획, 조직, 관리 등을 연구한다.

● OL608 국제무역환경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기구 및 각종 제도, 국제 경제의 특수한 환경, 국가간의 분쟁 등을 TOPIC 위주로 전반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우리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을 그 정치, 경제, 역사, 법 및 사회적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다.

● OL609 글로벌경영학특론 (Topics in Global Business)

기업규모의 확대와 무역거래의 증대는 기업의 사회성과 국가간의 상호 관계를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국제경영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작투자, 국제거래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기업의 해외사업의 환경, 대정부 관계 및 경영관리를 중점으로 다룬다.

● OL610 무역관습론특론 (Topics in Korean Trade)

무역관습과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무형무역의 기본적 흐름, 무형무역과 유형무역과의 관계, 세계 각국의 지역별 상관습과 문화 등 무역관습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중점을 폭넓게 다룬다.

● OL611 한국무역론특론 (Topics in Korean Trade)

한국무역의 구조적 특성, 한국 경제의 성장과 무역과의 관계, 한국무역의 당면 과제, 한국무역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의 역사적 배경, 경제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 중심으로 다룬다.

● OL612 선하증권특론 (Topics in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의 법률적 성질, 종류,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OL613 무역영어특론 (Topics in English International Trade)

무역업무수행에 필요한 효과적인 영문 통신문의 작성요령, 무역영어의 해설과 문서작성, 기타 무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영문서류작성 등에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OL614 인터넷비즈니스특론 (Topics in Internet Business)

인터넷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상품거래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인터넷비즈니스 거래 발생시 필요한 제반서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인터넷비즈니스 거래의 기초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의 제 단계를 검토해 본다.

● OL617 국제통상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Commerce)

국가간 통상관계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WTO의 기능 및 규범, 주요교역대상국의 통상기구, 제도와 관계법규를 살펴보고 국제통상분쟁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이해를 배양한다.

● OL618 경제통합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경제통합에 따른 효과 및 생성동기,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하여 다루며, 이에 대한 방안 등을 연구한다. 또한 최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경제기구들의 성립배경과 목적, 실질적 역할을 이해한다.

● OL620 국제물류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Logistics and SCM)

국제적으로 신속한 변화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국제 물류분야의 전반에 관한 전략적 물류관리

및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의 물류활동의 종합적인 이해와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국제물류의 주요 구성요소인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 그리고 유통가공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물류관리와 SCM을 연구한다.

● OL621 국제비즈니스계약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국제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그 대상이 되는 물품, 서비스, 기술, 자본 및 복합형태의 다양한 관련 국제거래형태의 비즈니스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학습한다. 국제거래 형태에 따른 계약서 유형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 그리고 계약불이행과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OL622 무역결제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Payments)

무역에서 이루어지는 L/C베이스와 non L/C 베이스 및 전자결제제도 등 국제결제방식을 중심으로 상무적 및 법적 내용을 학습한다. 국제결제방식에서 고려되는 메카니즘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결제방식의 특성과 한계 및 그 대응방안 등을 연구한다.

● OL623 계량경제학특론 (Topics in Econometrics)

환율, 물가, 임금, 이자율, 주가, 통화량,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변수들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자료와 통계분석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국제금융이론과 국제무역이론이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연구한다.

● OL624 글로벌기업특론 (Topics in Global Enterprise)

국제기업의 경쟁력은 협상에서 발생한다. 협상의 중요성과 협상기술 및 유형을 통해 국제기업협상의 실제, 즉 해외직접투자, 기술제휴, 자원개발수입, 합작투자, M&A, 소유권협상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협상논리와 기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OL619 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위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연마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에 관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다. 금융보험학전공(Major in Finance & Insurance)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4192호 TEL: 450-2630
- 수여 학위명: 경영학석사(금융보험학)

1. 교육목표

- 금융학과 보험학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금융·보험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의 재교육장을 제공한다.
- 금융·보험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체계적인 연구 인력을 배출한다.

2. 연혁 및 특징

- 1999년 3월 석사과정인 개설되어 지금까지 석사 22명을 배출하였으며, 2016년 3월 현재 9명이 재적 중이다.
- 금융보험학과는 금융전공, 보험전공으로 구분하여 전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학점을 상호 연구하도록 되어있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조영석	교수	경영학박사 (건국대)	재무금융	450-2631 (yscho@mnu.ac.kr)
이성남	교수	법학박사 (고려대)	상법/금융법/ 보험법	450-2633 (leesn@mnu.ac.kr)
이형기	부교수	법학박사 (고베대)	금융법/ 금융보험정책	450-2632 (hkkobe1140@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M601	통계분석세미나(Seminar in Statistical Analysis)	3
	OM602	재무금융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Management)	3
	OM603	금융학세미나(Seminar in Money Banking)	3
	OM604	금융기관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Institution)	3
	OM605	투자분석세미나(Seminar in Investment Analysis)	3
	OM606	국제금융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3
	OM607	선물시장세미나(Seminar in Futures Market)	3
	OM608	금융마케팅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Marketing)	3
	OM609	증권분석세미나(Seminar in Stock Analysis)	3
	OM610	금융위험관리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Risk Management)	3
	OM611	보험경영세미나(Seminar in Insurance Company Management)	3
	OM612	생명보험세미나(Seminar in Life Insurance)	3
	OM613	개인재무계획세미나(Seminar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3
	OM614	기업리스크관리세미나(Seminar in Corporate Risk Management)	3
	OM615	손해보험세미나(Seminar in Property of Insurance)	3
	OM616	자동차보험세미나(Seminar in Automobile Insurance)	3
	OM617	보험마케팅세미나(Seminar in Insurance Marketing)	3
	OM618	보험정책세미나(Seminar in Insurance Policy)	3
	OM619	배상책임보험세미나(Seminar in Liability Insurance)	3
	OM620	보험경영정책 및 전략세미나(Seminar in Strategic Planning of Insurance Company Management)	3
	OM621	재무회계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Accounting)	3
	OM624	부동산금융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Finance)	3
	OM625	해상보험세미나(Seminar in Marine Insurance)	3
	OM626	금융고객서비스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Customer Service)	3
연구과목	OM623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M601 통계분석세미나 (Seminar in Statistical Analysis)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습득한 다음 과학적 분석기법의 활용방법을 검토하게 되며, 특히 여러 통계기법을 유형별로 분류함과 동시에 이들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과제를 통한 전산통계패키지의 직접적인 활용을 훈련하게 된다.

● OM602 재무금융세미나 (Seminar in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 그리고 계획 및 통제 등 자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 OM603 금융학세미나 (Seminar in Money Banking)

금융시장과 관련된 이자율결정이론, 금융제도와 금융정책 등에 관한 문제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하며 연구한다.

● OM604 금융기관세미나 (Seminar in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의 현황과 각 금융기관의 기능 및 업무내용을 학습하고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금융서비스가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토론하며 연구하고자 한다.

● OM605 투자분석세미나 (Seminar in Investment Analysis)

증권투자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으로써 증권시장의 거래대상, 구성, 가격형성의 결정요소, Portfolio 관리, 증권시장 기구,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토론하고 연구한다.

● OM606 국제금융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국제수지의 이론과 정책 및 국제통화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또한 외환시장과 환율의 결정이론 상이한 환율제도하에서의 국제수지의 조정이론과 조정정책 등을 논한다.

● OM607 선물시장세미나 (Seminar in Futures Markets)

선물거래의 형태 및 기능, 선물시장의 구조 등에 관해서 논하고 선물가격결정의 이론 및 응용을 연구한다.

● OM608 금융마케팅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Marketing)

금융과 관련된 마케팅의 주요과제, 전략수단, 마케팅의 정보와 조사, 판매관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과 가격전략을 고찰한다.

● OM609 증권분석세미나 (Seminar in Securities Analysis)

증권, 채권의 종류 및 특성, 증권, 채권시장의 제도에 관한 특성, 발행시장과 증권의 발행에 대한 문제, 유통시장과 증권의 거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증권분석 및 증권투자 등을 논의한다.

● OM610 금융위험관리세미나 (Seminar in Financial Risk Management)

경제적 위험관리 및 심리적 불안감소, 기업 활동의 계속적인 유지, 강화, 기업성장 촉진과 도산의 미연방비, 기업의 목적 달성과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을 위해 위험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위험 절차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 OM611 보험경영세미나 (Seminar in Insurance Company Operation)

보험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이론 및 실무 측면에서 연구한다. 즉 보험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마케팅, 언더라이팅, 투자, 재무 및 회계, 경영정책 및 전략, 그리고 보험감독까지를 포함하는 제 기능에 대하여 발표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 한다.

● OM612 생명보험세미나 (Seminar in Life Insurance)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사망 등의 리스크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리기법으로서의 생명보험에 대해 상품, 수리, 약관, 적립금, 감독규제 등과 같은 본질적인 측면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생명보험분야의 변화측면까지를 포함하여 심도있게 검토 및 분석한다.

● OM613 개인재무계획세미나(Seminar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개인재무계획은 개인이 자신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 계획을 개발 및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은 개인재무계획의 개념, 개인재무계획의 개발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험계획, 투자계획, 퇴직계획, 세금계획, 상속계획, 현금흐름관리 등을 각각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한다.

● OM614 기업리스크관리세미나(Seminar in Corporate Risk Management)

리스크관리에 관한 고급이론을 통해 현대의 기업이 경영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특수한 부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금융산업에서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 및 검토한다.

● OM615 손해보험세미나 (Seminar in Non-Life Insurance)

재산을 소유·관리·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속하며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연구하게 된다.

● OM616 자동차보험세미나 (Seminar in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의 소유·관리에 따른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금, 차량손해 등을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법, 교통사고와 법률관계, 보험약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게 된다.

● OM617 보험마케팅연구 (Studies in Insurance Marketing)

보험과 관련된 마케팅의 주요과제, 전략수단, 마케팅의 정보와 조사, 보험마케팅의 판매관리,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과 가격전략을 고찰한다.

● OM618 보험정책세미나 (Seminar in Insurance Policy)

금융정책, 보험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통화가치 안정을 유지하고 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여러 법의 제정과 행정권을 통해 엄격히 감시, 통제하는 등 일국의 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OM619 배상책임보험세미나 (Seminar in 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제3자에 대한 인체치상이나 제3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배상책임에 부보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OM620 보험경영정책 및 전략세미나(Seminar in Strategic Planning of Insurance Company Management)

보험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고 보험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제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OM621 재무회계세미나 (Seminar in Financial Accounting)

기업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인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회계를 외부정보목적회계로서 집중연구하며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과이다.

● OM624 부동산금융세미나 (Seminar in Real Estate Finance)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본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할 것을 감안하여 부동산금융의 재무관리,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금융 그리고 부동산 증권시장과 외국의 부동산 금융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검토하여 본다.

● OM625 해상보험세미나 (Seminar in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에 관한 이론과 해상보험계약과 관련한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영국의 해상보험약관(상품) 및 요율체계(가격구조)의 내용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 OM626 금융고객서비스세미나 (Seminar in Financial Customer Service)

본 교과목은 금융인뿐만 아니라 개인 생존 전략시대에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자기 관리에 대한 이미지 전략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국제매너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연구

라.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Major in Tourism Management)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A8) 2185호 TEL: 061-450-2640
- 수여 학위명: 경영학석사(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

1. 교육목표

- 글로벌 관광현상을 이해하는 창조적인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 관광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겸비한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 국내의 관광산업을 이해하는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수 있는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 국제 관광산업을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 정부와 민간의 관광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2. 연혁 및 특징

- 1999년 3월 경영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
- 2017년 7월 전공 명칭변경(관광경영학 ->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
-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해진 관광객의 요구와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으로서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산업을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과 관광객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훌륭한 자질의 관리자 및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이진형	교 수	관광학 박사 (TEXAS A&M Univ.)	관광자행동/ 관광자원해설	061-450-2642 (jlee@mnu.ac.kr)
심원섭	교 수	관광학 박사 (한양대)	관광정책/ 관광기획 및 개발	061-450-2643 (wsshim@mnu.ac.kr)
김효진	교 수	호텔관광학 박사 (Texas Tech Univ. Hospitality Administration)	관광경제/ 호스피탈리티경영	061-450-2645 (hyojin1126@mnu.ac.kr)
구동우	부교수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세종대)	호텔관광/호텔관광인 적자원관리/ 외식식음료	061-380-8535 (gdw9@mnu.ac.kr)
허동근	조교수	관광학 박사 (부산대)	지속가능한관광/ MICE/스마트관광	061-450-2641 (dongkeunhur@mnu.ac.kr)
박홍식	명예교수	경영학 박사 (경기대)	서비스운영관리	061-450-2644 (parker@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N601	관광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 in Tourism)	3
	ON603	관광개발연구(Studies in Tourism Development)	3
	ON605	관광마케팅연구 (Studies in Tourism Marketing)	3
	ON607	관광자원관리연구(Tourism Resources Management)	3
	ON609	관광정책연구(Study on Tourism Policy)	3
	ON610	관광행동연구 (Studies in Tourist Behavior)	3
	ON612	레저산업연구 (Studies in Leisure Industry)	3
	ON613	관광서비스연구 (Studies in Tourism Service)	3
	ON614	환대산업연구 (Studies in Hospitality Industry)	3
	ON619	생태관광연구 (Studies in Ecotourism)	3
	ON623	문화관광연구 (Studies in Culture Tourism)	3
	ON624	커뮤니티관광연구 (Studies in community Tourism)	3
	ON625	국제관광연구 (Studies in International Tourism)	3
	ON626	지역축제연구 (Studies in Regional Festival)	3
	ON627	대안관광연구 (Studies in Alternative Tourism)	3
	ON628	해양관광연구 (Studies in Marine Tourism)	3
	ON629	관광인적자원관리연구 (Studies in Tourism Human Resource Management)	3
	ON630	호텔경영연구(Studies in Hotel Management)	3
연구과목	ON620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N601 관광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 in Tourism)

관광 및 관광관련 사회 제현상에 관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유용한 통계로 만들어 활용하는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확률, 통계추정, 가설검증, 비모수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 군집분석 등을 연구영역으로 한다.

● ON603 관광개발연구(Studies in Tourism Development)

이용자 주변 환경여건 및 자원유형에 따른 리조트의 개발성격 구분, 국내외 개발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리조트의 유형별 일반적 구성 원칙과 개발의 특성요소, 관리를 위한 특수프로그램, 사업전략 등을 연구·검토한다.

● ON605 관광마케팅연구 (Studies in Tourism Marketing)

마케팅이론을 관광시장에 적용시킴으로써 관광시장의 형태, 규모, 특성과 시장조사방법, 시장광고 등에 관한 시장성의분석이론과 사례를 연구한다.

● ON607 관광자원관리연구 (Tourism Resources Management)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보자 지속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이용, 관리에 관한 이론을 사례 중심으로 연구한다.

● ON609 관광정책연구 (Study on Tourism Policy)

관광에 관련되 사업체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업, 운영, 마케팅, 제정의 기본지식을 이용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합적 사고능력과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ON610 관광행동연구 (Studies in Tourist Behavior)

환대산업에 관련된 소비패턴을 연구하고 왜 소비자가 특정한 관광상품 혹은 숙박시설을 선택하는지의 의사 결정과정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태도, 행동양식 및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지식을 연구한다.

● ON612 레저산업연구 (Studies in Leisure Industry)

인간생활은 반복적인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생활이 보다 바람직한, 그리고 미래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다.

● ON613 관광서비스연구 (Studies in Tourism Service)

소비자의 만족은 제품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다. 높아져 가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서비스품질이 경쟁의 새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교과는 서비스품질의 내용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과 서비스품질향상의 장애요인을 밝히고

개선안을 찾고 전사적인 서비스 품질 시스템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 ON614 **환대산업연구 (Studies in Hospitality Industry)**

환대란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서비스제공자로부터 환대의 느낌에 관한 것이다. 환대의 주 내용은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각되어야 한다. 이 교과는 환대산업에서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 ON619 **생태관광연구 (Studies in Ecotourism)**

생태관광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광지의 발전에 결과를 주는 환경적인 영향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논의한다. 환경적인 영향평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

● ON623 **문화관광연구 (Studies in Culture Tourism)**

한국의 문화관광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인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의 핵심적 동력이다. 이러한 문화관광을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로 바라보고 이를 통한 다양한 관광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 ON624 **커뮤니티관광연구 (Studies in community Tourism)**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티 관광의 다양한 분야를 인식하고 개발되어진 공간에 대하여 관광과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개발을 위해 연구한다.

● ON625 **국제관광연구 (Studies inInternational Tourism)**

국제관광의 현황과 국제관광기구, 주요 관광대국의 관광정책 및 조직현황, 국제 관광객의 욕구체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제 관광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관광산업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ON626 **지역축제연구 (Studies in Regional Festival)**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고 적절한 수익도 올리는 방안,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 지역관광산업의 발달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를 기획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ON627 **대안관광연구 (Studies in Alternative Tourism)**

본 교과목은 대안관광이 발전, 경영되는 사회, 문화적 문맥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 상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안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함. 세부적으로 문화관광, 예술관광, 종교관광, 모험관광, 생태관광, 의료관광, 농촌관광등에 대한 소개, 관련 개념과 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구체적인 사례제시를 통해 향후 대안관광의 발전 및 미래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음.

● ON628 **해양관광연구 (Studies in Marine Tourism)**

세계적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잠재수요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광에 대한 국내·외 현상을 이해하고 인식을 통한 보다 다양한 방향을 연구한다.

● ON629 관광인적자원관리연구 (Studies in Tourism Human Resource Management)

관광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관광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현대적인 기술적 측면과 인적 자원 측면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관광산업 내의 여러 조직체들의 핵심자산은 바로 인간인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핵심자산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 ON630 호텔경영연구(Studies in Hotel Managment)

호텔경영학의 세분화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리의 원칙과 응용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 교과에서는 주로 실제 사례문제에 관해 프로젝트가 주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호텔경영에 관해 창조적인 사고와 호텔경영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 ON620 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관광학 학위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연마하고 실례적인 논문작성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마. 전자상거래학전공(Major in Electronic Commerce)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2184호 TEL: 450-2650
- 수여 학위명: 경영학석사(전자상거래학)

1. 교육목표

- 최근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거래, 포장, 운송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과 판매자 대상 컨설팅
- 지역의 시장 및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전문가 육성

2. 연혁 및 특징

- 2022년 3월 경영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

3. 교수 소개

성명	직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조광문	교수	이학박사	컴퓨터응용	450-2653 (ckmoon@mnu.ac.kr)
이석인	교수	경영학박사	경영정보시스템	450-2654 (silee@mnu.ac.kr)
최수정	부교수	경영학박사	경영정보시스템	450-2651 (mischoisj@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E601	전자상거래시장분석(E-Commerce Market Analysis)	3
	OE602	전자상거래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in E-Commerce)	3
	OE603	웹프로그래밍특론(Topics in Web Programming)	3
	OE604	데이터베이스특론(Topics in Database)	3
	OE605	글로벌셀링전략(Strategies in Global Selling)	3
	OE606	e-비즈니스전략(Strategies in e-Business)	3
	OE607	디지털커머스전략(Strategies in Digital Commerce)	3
	OE608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3
	OE609	인터넷마케팅전략(Strategies in Internet Marketing)	3
	OE610	고급전자상거래세미나(Advanced Seminar for E-Commerce)	3
	OE611	전자상거래유통물류시스템(E-Commerce Distribution & Logistics System)	3
	OE612	전자상거래법규연구(Studies in Laws of E-Commerce)	3
	OE613	전자상거래사례연구(Case Studies in E-Commerce)	3
	OE614	정보기술특론(Topics in Information Technology)	3
	OE615	전자상거래상품기획(E-Commerce Products Planning)	3
연구과목	OE616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E601 전자상거래시장분석 (E-Commerce Market Analysis)

디지털경제에 대한 메가 트렌드와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최신 전자상거래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해 분석한다.

● OE602 전자상거래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E-Commerce)

전자상거래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의 문제점, 장점 및 약점들을 토론하면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 OE603 웹프로그래밍특론 (Topics in Web Programming)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인터넷 웹 페이지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웹서버 환경(웹서버의 설정, SQL Sever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및 웹프로그래밍)의 설치에서부터 설계 및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서버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OE604 데이터베이스특론 (Topics in Database)

지리정보시스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및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진보된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한다.

● OE605 글로벌셀링전략 (Strategies in Global Selling)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를 위한 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쇼피, 쿠팡 등 글로벌 마켓 플랫폼들의 특징에 따른 글로벌 셀링 전략을 연구한다.

● OE606 e-비즈니스전략 (Strategies in e-Business)

인터넷 기업 경쟁환경을 분석하고,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 등 전략대안의 비교 분석 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 OE607 디지털커머스전략 (Strategies in Digital Commerce)

전자상거래 시장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와 영상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새로운 쇼핑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 커머스 또는 라이브 커머스로 발전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디지털 커머스 전략을 연구한다.

● OE608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웹 서버 동작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료전달 과정을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 기술과 함께 다양한 API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 OE609 인터넷마케팅전략 (Strategies in Internet Marketing)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제품을 직접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정보를 습득하고 구매결정을 하는 방식이나 구매 후

행동양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마케팅과 달리 인터넷 마케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응용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광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e-mail 마케팅, One-to-one 마케팅, CRM(고객관계관리)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 OE610 고급전자상거래세미나 (Advanced Seminar for E-Commerce)

프로젝트 제작을 위한 기초단계로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한 최신정보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웹사이트 구축에 관한 효율적 방법을 토론한다.

● OE611 전자상거래유통물류시스템 (E-Commerce Distribution & Logistics System)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첨단 유통물류시스템에 대해 연구한다.

● OE612 전자상거래법규연구 (Studies in Laws of E-Commerce)

전자상거래와 연관되는 제반 법규와 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하며, 아울러 세계 각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법규에 대한 제정현황에 대하여 연구한다.

● OE613 전자상거래사례연구 (Case Studies in E-Commerce)

최신 글로벌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연구한다.

● OE614 정보기술특론 (Topics in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기초기술 및 응용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 OE615 전자상거래상품기획 (E-Commerce Products Planning)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의 기획, 구입, 가공, 상품진열, 판매 등 머천다이징에 대해 연구한다.

● OE616 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위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연마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에 관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행정학과(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가. 행정학전공(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3160호 TEL: 450-2240
- 수여 학위명: 행정학석사(행정학)

1. 교육목표

-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을 갖춘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을 갖춘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관리능력을 갖춘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 전문적 행정지식과 공직윤리를 갖춘 행정인 연구자 양성
- 정부와 민간의 업무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관리자 및 연구자 양성

2. 연혁 및 특징

- 1991년 3월 경영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
- 행정현상은 현대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하며,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날로 더해가고 있다. 행정학은 이러한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설명 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행정학과는 행정학과 인접 학문을 연구교수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 기여하고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김병록	교 수	행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학/ 계량분석	450-2246 (brkim@mnu.ac.kr)
공병천	교 수	행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학/ 성과관리	450-2241 (bckong@mnu.ac.kr)
류도암	부교수	행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인사행정 조직행정 갈등관리	450-2242 (daryu2018@mnu.ac.kr)
박찬영	부교수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지방행정 지방재정	450-2248 (cypark@mnu.ac.kr)
김나영	조교수	정책학박사 (서울대학교)	재무행정/ 재정정책	450-2244 (nykim@mnu.ac.kr)
서창호	명예교수	정치학박사 (전남대학교)	정치학	-
박종두	명예교수	행정학박사 (연세대학교)	인사행정	-
손귀원	명예교수	행정학박사 (전남대학교)	조직행정	-
양승주	명예교수	행정학박사 (연세대학교)	도시.지방행정	-
김인룡	명예교수	행정학박사 (전남대학교)	재무행정	-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C601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	3
	OC602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
	OC603	재무행정론(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3
	OC605	정책이론(Policy Theory)	3
	OC606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3
	OC607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3
	OC608	한국정부론(Korean Government)	3
	OC609	정부정보관리론(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3
	OC610	조사방법론(Social Research Method)	3
	OC611	공기업론(Public Enterprise)	3
	OC612	행정사례연구(Cas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3
	OC613	조직행태론(Organization Behavior)	3
	OC615	기획이론(Public Planning Theory)	3
	OC616	정부예산론(Government Budgeting)	3
	OC618	공공감사론(Public Audit)	3
	OC619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3
	OC620	성과관리론(Performance Management)	3
	OC621	지방행정론(Local Governance Administration)	3
	OC622	행정철학(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3
	OC623	공공갈등의 이론과 실제(Studies in Theory & Practice of Public Conflict)	3
	OC624	지방재정론(Local Finance)	3
	OC625	행정이론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3
연구과목	OC617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C601 조직이론 (Organization Theory)

조직이론의 일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조직행태론과 조직 구조 설계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 OC602 인사행정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인사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대 인사행정의 실제 및 기본적 이론을 고찰한다. 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아울러 연구한다.

● OC603 재무행정론 (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예산의 기능, 예산제도의 발달, 자원배분, 예산과 국민경제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OC605 정책이론(Public Policy)

정책연구의 과정론적 입장에서 정책학의 기본적인 지식체계 및 정책의 제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상의 제반 이론 및 요인들을 연구, 검토한다.

● OC606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말미암은 환경오염이 불러온 지구와 인류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자연과 조화하는 발전을 모색하는 행정에 초점을 맞춘다.

● OC607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국가의 기능 속에서 차지하는 도시의 고유기능을 파악하고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도시행정의 고유영역을 식별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이용가능한 기법을 소개한다. 도시개발, 도시빈곤, 환경, 주택, 교통 등이 이에 포함되어 강의한다.

● OC608 한국정부론(Korean Government)

한국 정치·행정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특히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정치·행정의 구조, 정치·행정 과정의 특색, 바람직한 정치·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OC609 정부정보관리론(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각 정부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관리하여 정부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정보공동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화정책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OC610 조사방법론(Social Research Method)

방법론을 크게 광의의 방법론인 인식론, 협의의 방법론인 기교로서의 조사방법론, 그리고 중간범위인 중범위 방법론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사방법에 초점을 두어 조사방법에 대한 기초적 소양과 적절한 기술을 터득하게 하고,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기초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한다.

● OC611 공기업론(Public Enterprise)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공공성과 기업성에 입각하여 고찰함으로써 공기업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이 공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공기업, 한국의 공기업 등을 비교·고찰한다.

● OC612 행정사례연구(Cas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에 광범위한 사례를 연구 및 분석하여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킨다.

● OC613 조직행태론(Organization Behavior)

조직 내에서의 인간의 형태, 개인과 집단의 형태, 그리고 환경에 대한 행위주체로서 조직행태를 이해, 예측, 판단 응용하는 것을 강의한다.

● OC615 기획이론(Public Planning Theory)

기획이론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분석·검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요인과 전략을 탐색하는 데 있다.

● OC616 정부예산론(Government Budgeting)

현대 정부의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형평성을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예산론은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정부예산의 원리, 기능, 과정, 구조를 설명하고 물질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예산제도 개혁 방안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OC618 공공감사론(Public Audit)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책무성 제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등 내·외부감사를 포괄하는 감사현실을 파악하고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OC619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자 정부의 개념 및 그 구현에 대하여 고찰하고, 아울러 전자정부의 구현을 행정개혁과 접목시킨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본다.

● OC620 성과관리론(Performance Management)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의 개발, 설정,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학습한다.

● OC621 지방행정론(Local Governance Administration)

지방행정의 의의, 기능,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역할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 OC622 행정철학(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활동의 본질을 규명하고 행정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이해한다. 그리고 행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들 가치들은 실제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 OC623 공공갈등의이론과실제(Studies in Theory & Practice of Public Conflict)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은 본 교과목을 통해 책갈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이론과 방법, 그리고 이미 발생한 갈등을 호혜적 원칙 아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OC624 지방재정론(Local Finance)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주된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분권의 내실질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바,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재정이라고 볼 수있다.

● 행정이론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본 교과목은 행정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변천해 온 다양한 행정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행정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숙지한다.

● OC617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행정학 학위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연마하고 실례적인 논문작성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나. 지적학전공(Major in Land Administration)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3179호 TEL: 450-2250
- 수여 학위명: 행정학석사(지적학)

1. 교육목표

- 지적학과 관련된 제 학문(부동산, 도시 및 지역계획, 지적측량 및 토지정보, 토지관련 정책 및 법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목적인 국토이용의 목표를 구현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 및 관리기법에 대한 이론을 모색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토정보의 체계화 및 제반 관련 학문을 통한 지적학의 원리 모색을 통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서 바라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2. 연혁 및 특징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부동산,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과 이해를 목표로 지적 및 부동산관련 업무의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지적학은 위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관련법규와 지적측량, GIS 및 원격탐사, 부동산거래에 대한 이해, 지적행정과 관련된 사항, 토지정책에 관련된 사항 등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박민호	교 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측량 GIS 및 원격탐사	450-2254 (mhpark@mnu.ac.kr)
최승영	교 수	법학박사 (목포대학교)	지적 및 부동산 관련법	450-2255 (sychoi09@hanmail.net)
서용수	부교수	지적학박사 (목포대학교)	지적학 및 지적측량	061-450-2251 (seoyos@mnu.ac.kr)
박정일	부교수	지적학박사 (목포대학교)	부동산학 및 공간정보	061-450-2252 (giskorea2020@mnu.ac.kr)
이선구	조교수	부동산학박사 (건국대학교)	부동산경제	450-2253 (leeseonku@mnu.ac.kr)
임이택	명예교수	경영학박사 (전주대학교)	부동산학 /감정평가	(rtlim@hanmail.net)
신순호	명예교수	행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	(soonho222@hanmail.net)

4. 교과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D601	지적학연구(Study on Land Administration)	3
	OD602	부동산학특론(Advanced Real Estate Principles)	3
	OD603	도시계획특론(Advanced Urban Planning)	3
	OD608	원격탐사특론(Advanced Remote Sensing)	3
	OD609	감정평가연구(Study on Real Estate Appraisal)	3
	OD612	도시행정세미나(Seminar in Urban Administration)	3
	OD613	토지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	3
	OD617	GPS위성측량학(Global Positioning System Satellite Surveying)	3
	OD619	부동산중개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Mediation)	3
	OD620	토지재산법세미나(Seminar in Law of Land Property)	3
	OD621	국유재산관리세미나(Seminar in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3
	OD622	부동산컨설팅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Consulting)	3
	OD624	토지공법세미나(Seminar in Land Public Laws)	3
	OD627	공간정보학특론(Advanced Spatial Information System)	3
	OD628	지적법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Laws)	3
	OD631	부동산권리분석론(Real Estate Title Analysis Theory)	3
	OD632	사진측량학특론(Advanced Photogrammetry)	3
	OD634	지적행정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Administration)	3
	OD635	지적조사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Field Survey)	3
	OD636	토지제도사세미나(Seminar in Land History)	3
	OD637	국토계획법제세미나(Seminar in National Land Planning Laws)	3
	OD638	지적측량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Surveying)	3
	OD639	부동산등기론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Registration Theory)	3
	OD640	부동산정책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Policy)	3
	OD641	정보통신기술활용세미나(Seminar on Applicatio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Geoinformatics)	3
연구과목	OD618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D601 지적학연구(Study on Land Administration)

지적의 기본적 연구 분야로서 지적의 학문적 기본 이론, 지적제도의 발달 과정, 지적의 등록과 기본적 토지측량 내용, 지적조사 등의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지적의 학문적 체계를 위한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 OD602 부동산학특론(Advanced Real Estate Principles)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해진 부동산활동의 전문적인 영역이 날로 늘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선진화된 부동산활동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를 맞이해야 한다. 부동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국제무역의 개방화 물결 속에서 부동산 중개·부동산감정평가·부동산관리·부동산권리분석 등 부동산 서비스업분야에도 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부동산학을 여러 관점에서 탐구·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OD603 도시계획특론(Advanced Urban Planning)

도시의 일반적 개념과 계획에 대한 이론 연구 부문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도시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도시 계획 이론과 수립 과정, 실제 수립 과정과 문제점, 계획의 일반 이론 등을 연구하며 여타 도시 연구를 위한 기본 체계를 도모한다.

● OD608 원격탐사특론(Advanced Remote Sensing)

주로 위성영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응용과학의 한 분야인 원격탐사는 환경, 도시계획, 자원조사, 지도제작 등의 분야에서 정보취득 및 기초자료 취득의 한 방법으로서 활용된다. 주요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탐사란 무엇이며, 둘째, 원격탐사의 일반적 처리과정으로서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과정, 기하보정, 영상강조, 영상분석, 결과 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셋째, 원격탐사가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넷째, 이를 위해 원격탐사 소프트웨어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ERDAS Imagine Image Processing System(또는 다른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을 이용한 실습 및 사용 예를 통하여 원격탐사의 기본적인 자료 처리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이상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에 중점을 둔다.

● OD609 감정평가연구(Study on Real Estate Appraisal)

부동산은 자체의 특성들로 인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 다른 재화와는 상이하므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에 맞는 평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 OD612 도시행정세미나(Seminar in Urban Administration)

폭 넓게 그리고 급속하게 전개되는 도시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는 도시행정의 역할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도시행정의 개념, 도시화의 실상, 도시행정의 공급체제, 광역행정, 도시개발 정책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실제 부문을 연구한다.

● OD613 토지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국토경과 관련 정책정보지원,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해 및 응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석사과정에서 공부한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LIS(Land Information System)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례를 든 실습 위주로 연구한다. 즉 LIS란 무엇이며, LIS를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지적제도와 전산화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LIS의 중요성 및 활용방법에 대해 알게 된다.

● OD617 GPS위성측량학(Global Positioning System Satellite Surveying)

최근 지적 기준점 관측에 활용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예를 들면, GPS 위성의 특성, GPS의 측위원리, 측위오차, GPS 측량방법, DGPS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다. 또한 GPS 수신장비를 사용하여 현장관측을 수행하고, GPS 수신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실습도 병행한다.

● OD619 부동산중개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Mediation)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불합리점에 관한 분석과 유통시장의 질서확립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강의한다.

● OD620 토지재산법세미나(Seminar in Law of Land Property)

국가의 기능 속에서 차지하는 도시의 고유기능을 파악하고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도시행정의 고유영역을 식별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이용 가능한 기법을 소개한다. 도시개발, 도시빈곤, 환경, 주택, 교통 등이 이에 포함되어 강의한다.

● OD621 국유재산관리세미나(Seminar in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을 보전·이용하여 국가경제와 바람직한 국토관리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 OD622 부동산컨설팅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Consulting)

부동산이 가지는 종합적 측면을 연구하고 부동산에 관한 최유효이용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과학적 분석기법 및 제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제반 자문과 조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한다.

● OD624 토지공법세미나(Seminar in Land Public Laws)

국토와 관련된 제반 법 체제를 연구한다. 국토와 도시공간, 토지와 지적 등 관련 법 체제로서, 국토 및 도시계획과 이와 관련된 절차 법규, 지적법규 등을 다룬다.

● OD627 공간정보학특론(Advanced Spatial Information System)

인류의 문화가 향상됨에 따라 환경 및 자원문제에 대한 해석이 날로 고도화됨으로써 응용과학의

한 분야인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응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부동산, 도시계획, 환경, 자원조사, 측량 지도제작 등의 분야에서 정보취득 및 관리의 한 방법으로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즉 공간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이며, 공간정보시스템에 활용되는 자료입력, 자료관리, 공간분석, 결과출력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이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실습으로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OD628 지적법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Laws)

토지등록공사의 기본법인 지적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보다 구체적인 법해석을 통해 지적실무 처리능력 향상과 지적행정의 적응능력을 배양함을 학습목표로 한다.

국토관리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학문이다.

● OD631 부동산권리분석론(Real Estate Title Analysis Theory)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판단하여 한전한 부동산활동을 영위함을 목표로 사법상 부동산등기를 관독하고 권리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공법상 부동산의 이용관계까지 분석한다.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넓게는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과 정부의 각종 정책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해지는 부동산거래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연구 학습한다.

● OD632 사진측량학특론(Advanced Photogrammetry)

실제 감각능력을 활용하여 사물을 입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항공기에 의한 삼각측량, 사진판독, 지상사진측량, 원격탐사항공사진에 의한 지도제작을 연구한다.

● OD634 지적행정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Administration)

지적에 대한 사회적 기능의 다변화에 따라 지적제도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지적행정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즉, 토지이용의 입체화와 정보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이론적 정립과 지적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전을 연구한다.

● OD635 지적조사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Field Survey)

지적학의 기초이론과 지적사에 관해 심도 있는 학습과 지적(地籍)에 관한 제반 정보수집 및 분석에 따른 이론을 습득하고 조사에 관한 기법을 학습함을 목적으로 연구한다.

● OD636 토지제도사세미나(Seminar in Land History)

역사적으로 토지의 소유와 이용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왔으며 국가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토지를 관리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토지제도는 사회구조, 개인회 생활수준, 경제적 · 사회적 권력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토지 소유 형태의 변천과정과

토지에 관한 국가정책의 추이를 고찰하고 각 시대의 토지제도 및 우리나라 및 각국의 토지 제도의 역사적인 측면과 발전적인 토지제도의 좌표설정 측면에서 연구한다.

● OD637 국토계획법제세미나(Seminar in National Land Planning Laws)

협소한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국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 이용, 개발, 보전, 거래 등을 규제 관리하는 국토에 관한 제반 법규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기초로 한 실제적인 이 법의 하위법들을 연구한다.

● OD638 지적측량세미나(Seminar in Cadastral Surveying)

토지측량학, 기준점측량, 확정측량, 응용측량의 종합적인 이론 부분을 더욱 심도있게 학습한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측량전산분야와 최근 지적 기준점 관측에 활용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측량에 대해 연구한다.

● OD639 부동산등기론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Registration Theory)

토지를 등록하는 부동산등기와 지적은 상호필수적 관계이나 각 제도의 이념에 따라서 공통점과 상이점도 있다. 근대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등기는 이 물권변동을公示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강좌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토지재산권의 권리변동에 적극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제도와와의 발전적 방안을 연구한다.

● OD640 부동산정책세미나(Seminar in Real Estate Policy)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부동산시장의 원리와 수요 그리고 공급적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연구한다.

● OD641 정보통신기술활용세미나(Seminar on Applicatio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Geoinformatics)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공간정보 분야의 연구 및 응용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드론, LiDAR,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AI), 모바일 기술 등 다양한 ICT 기술들을 이용한 공간정보 취득과 관리, 분석, 시각화 및 서비스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어떻게 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연구한다.

● OD618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논문의 작성방법 등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한 지도를 받는다.

3. 법학과(Department of Law)

가. 법학전공(Major in Law)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3156호 TEL: 450-2230
- 수여 학위명: 법학석사(법학)

1. 교육목표

- 법률학에 대한 정치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학부과정에서의 기초적인 법 이론의 바탕 위에 판례 등 실무적 지식을 연찬하도록 하여 전문 대학원으로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2. 연혁 및 특징

- 1991년 3월 경영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
- 법학과는 이론과 실제(판례 등), 양면에 걸친 법학 교육을 통해 사회현상을 법적 관점에서 파악·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학문이다. 법학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아울러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나아가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 참여 봉사토록 하고자 한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안영하	부교수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민 법	450-2231 lk600@hanmail.net
박석일	조교수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민 법	450-2232 vipsi@mnu.ac.kr
남정아	조교수	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헌 법	450-2237 wjddk0714@mnu.ac.kr
김재한	조교수	법학박사 (목포대학교)	형 법	450-2238 dan1245@mnu.ac.kr
조은별	조교수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형사법	450-2234 nabilnina@mnu.ac.kr
문광진	조교수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행정법	450-2233 kmoon@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G601	헌법연구(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3
	OG602	민법연구(Study on the Civil Law)	3
	OG603	형법연구(Study on the Criminal Law)	3
	OG604	기초법연구(The Basic Study of Jurisprudence)	3
	OG605	행정법연구(Study on the Administrative Law)	3
	OG606	상법연구 I (Study on the Commercial Law I)	3
	OG607	국제법연구(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3
	OG608	노동법연구(Study on the Labor Law)	3
	OG609	기본권론연구(Study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3
	OG610	행정구제법연구(Study on the Administrative Remedy Law)	3
	OG612	형사정책연구(Study on the Criminal Policy)	3
	OG613	재산법연구(Study on the Property Law)	3
	OG614	상법연구 II (Study on the Commercial Law II)	3
	OG615	경제법연구(Study on the Economic Law)	3
	OG616	부동산등기법연구(Study o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3
	OG618	법철학연구(Study on Legal Philosophy)	3
	OG619	형사소송법연구(Study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3
	OG620	민사소송법연구(Study on the Civil Proceedings Act)	3
	OG621	지식재산권연구(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OG622	범죄론연구 (Studies in Criminal Theories)	3
	OG623	형사판례연구 (Studies in Case Studies in Criminal Law and Procedure)	3
	OG624	형사증거법연구 (Studies in Law of Criminal Evidence)	3
	OG625	헌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3
	OG626	경찰행정법연구(Studies in Police law)	3
	OG627	정보통신법연구(Studies in IT law)	3
연구과목	OG628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G601 헌법연구(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국가의 조직과 구성, 민주적 기본질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법치주의 인권 보장 등 헌법과 관련된 기본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헌법학에 있어서의 기본지식을 고양함과 아울러 헌법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고찰한다.

● OG602 민법연구(Study on the Civil Law)

민법의 지도원리, 민법의 해석론, 입법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론의 흐름 및 사상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법 등 민법 전반에 걸친 일반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OG603 형법연구(Study on the Criminal Law)

형법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을 전체적 체계와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개개의 문제영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OG604 기초법연구(The Basic Study of Jurisprudence)

영미를 중심으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법과 언어·논리·역사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설정하려 했던 다년간의 학제를 연구한다.

● OG605 행정법연구(Study on the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특징,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행위, 행정절차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에 관한 행정법 특유의 이론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행정법 전반에 대한 기본이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고찰한다.

● OG606 상법연구 I(Study on the Commercial Law I)

상법상 총칙 및 상행위이론에 대한 심오한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및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하고 현재의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고 현재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무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상기업에 관한 제 법규를 체계화시킨다.

● OG607 국제법연구(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일반적인 기본원리의 이해와 개괄적인 내용과약을 목적으로 하며 특수분야의 연구에 대한 입문적 과목이다.

● OG608 노동법연구(Study on the Labor Law)

현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근로자의 근로권 및 근로3권 등의 내용 및 그 구체적 보장방법, 실현을 위한 제도를 외국의 발전된 이론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검토한다.

● OG609 기본권론연구(Study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헌법의 요체가 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의 실체와 그 문제점 등을 탐구한다.

● OG610 행정구제법연구(Study on the Administrative Remedy Law)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실제적 구제와 절차적 구제로 나누어 강의한다.

● OG611 국제조직법연구(Study 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aw)

국제법의 특수분야로서 국제기구 등의 조직, 업무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OG612 형사정책연구(Study on the Criminal Policy)

범죄 원인론과 범죄화 이론, 형법과 사회통제, 형벌과 범죄의 사회적 기능, 형법과 범죄학의 관계발전에 관한 국내외의 주요이론 및 실무의 경향을 연구한다.

● OG613 재산법연구(Study on the Property Law)

민법 전반적인 법리를 이해함을 전제로 하여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련된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신분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와 비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 OG614 상법연구 II(Study on the Commercial Law II)

상법총론, 상행위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한다.

● OG615 경제법연구(Study on the Economic Law)

경제법의 이념과 대상을 연구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발전을 위한 경제법의 통제방식과 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은 국정국민성 또는 산업부분의 구조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연구한다.

● OG616 부동산등기법연구(Study o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공·사법 분야의 필요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부동산등기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OG617 법사학연구(Study on Legal History)

법의 성립과 개정 등 변천의 내용과 의미, 이유 및 불가피성을 연구하여 법의 역사적의미를 규정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의 역사적 적실성을 제고한다.

● OG618 법철학연구(Study on Legal Philosophy)

법규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법철학적 입장에 따라 고찰하고 또한 이러한 법철학적 사고에 충실할 때에 법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 OG619 형사소송법연구(Study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소송의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학설의 대립이 심한 부분을 집중 연구·검토함과 동시에 소송의 각 단계마다 적법절차 및 헌법적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OG620 민사소송법연구(Study on the Civil Proceedings Act)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본문제에 관한 고찰과 그 대상이 다른 소송의 주체소송의 객체, 소송절차 중 제기되는 본문제들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OG621 지식재산권연구(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소유권법의 현황과 장래, 산업재산권제도,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 나아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절차법, 의장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OG622 범죄론연구 (Studies in Criminal Theories)

범죄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범죄학이 담당하는 과제이다. 경험적 탐구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의미의 재평가 등은 전형사법학의 테두리 내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 및 특별형법의 이상적인 해석 및 그 적용을 연구한다.

● OG623 형사판례연구 (Studies in Case Studies in Criminal Law and Procedure)

일반적·추상적 형법규정의 의미를 구체적 실례를 통하여 생동감 있게 인식하도록 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중요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석을 한다.

● OG624 형사증거법연구 (Studies in Law of Criminal Evidence)

형사재판의 핵심인 증거에 관한 법칙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누가 그 불이익을 입을 것인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법칙을 다루고 있다.

● OG625 헌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판례와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중요 헌법판례를 헌법이론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 OG626 경찰행정법연구(Studies in Police law)

경찰작용에 있어 법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경찰법원칙을 비롯하여 경찰조직, 경찰작용, 경찰구제 전반에 관한 행정법이론을 연구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법이론과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 OG627 정보통신법연구(Studies in IT law)

정보통신 분야 주요 법령을 분석하고, 정보법의 고유성과 특징, 기타 정보통신분야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법이론과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 OG628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논문의 작성방법 등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도를 받는다.

4.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가. 경제학 전공(Major in Economics)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4186호, TEL: 450-2210, FAX: 450-6463
- 수여 학위명: 경제학석사(경제학)

1. 교육목표

-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에 따라 경제학의 연구 분야가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가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학문 영역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과정에서 인접 사회과학 및 디지털·정보경제학 등을 연구함으로써 경제학문에 대한 수준 높은 경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대학으로서 지역경제 전문가를 양성·배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역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것이 그 교육목표이다.
- 경제 환경의 국제화 지식의 실용화에 따른 제반 경제 현상을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흐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능력과 예측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한태평양 주요 대학 및 세계 명문대학들과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판단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국제 경제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2. 연혁 및 특징

- 1991년 3월 경영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
- 본 학과는 경제학 기초이론의 바탕 위에 경제이론의 심화를 위한 경제이론 모형 및 분석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한다. 이를 통해 이론모형의 현실적응력과 예측력을 높이며,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고두갑	교수	경제학박사 (일본중앙대학교)	공공경제학	450-2211 (go0983@mmu.ac.kr)
장시복	교수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화폐금융	450-2213 (sibok@mnu.ac.kr)
정경화	교수	경제학박사 (미시간주립대학교)	미시경제학	450-2215 (jeongkyo@mnu.ac.kr)
정상준	교수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거시경제학	450-2218 (jeongsj@mnu.ac.kr)
정한나	부교수	경제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노동경제학	450-2219 (hnjung5493@mnu.ac.kr)
임선영	부교수	국제학박사 (부산대학교)	국제경제학	450-2216 (seonyoung220@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A601	미시경제학특론(Topics in Microeconomics)	3
	OA602	거시경제학특론(Topics in Macroeconomics)	3
	OA603	화폐금융론특론(Topics in Money and Finance)	3
	OA607	디지털경제특론(Topics in Digital Economy)	3
	OA608	노동관계론특론(Topics in Labor Relations)	3
	OA616	수리경제학특론(Topics in Mathematical Economics)	3
	OA617	국제경제학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s)	3
	OA618	자원 및 환경경제학특론(Topics in Resource and Environmental Economics)	3
	OA620	공공정책특론(Topics in Public Policy)	3
	OA621	지방재정특론(Topics in Local Public Finance)	3
	OA622	통계조사방법론(Topics in Statistical Research Methodology)	3
	OA623	계량경제학특론(Topics in Econometrics)	3
	OA624	산업조직과 산업정책특론(Topic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dustrial Policy)	3
	OA625	국제지역경제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Area Economics)	3
	OA626	정책분석특론(Topics in Policy Analysis)	3
	OA627	경제정책특론(Topics in Economic Policy)	3
	OA628	정책평가특론(Topics in Policy Performance Measurement)	3
연구과목	OA619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A601 미시경제학특론 (Topics in microeconomics)

경제학 원론의 기초 위에 중급 정도의 소비자 선택이론, 생산이론, 시장형태와 산업조직, 분배이론, 일반균형 이론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동 원리와 미시경제 정책을 연구한다.

● OA602 거시경제학특론 (Topics in microeconomics)

국민소득의 결정과정 및 소득증대방안을 연구 강의하며 대내외적인 경제변화에 따라 거시 경제변수들이 국민 경제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 분석한다.

● OA603 화폐금융론특론 (Topics in Money and Finance)

통화량과 국민소득, 통화량과 물가수준, 통화량과 이자율의 관계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파급과정 및 운영방법, 통화정책의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OA607 디지털경제특론 (Topics in Digital Economy)

디지털 경제화의 정보처리수단과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화, 디지털네트워크 경제의 확산을 연구 분석한다.

● OA608 노동관계론특론(Topics in Labor Relations)

경제이론을 응용하여 노동시장의 문제, 즉 임금결정, 임금구조 등 노동의 경제적 분석과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적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한다.

● OA616 수리경제학특론(Topics in Mathematical Economics)

경제분석에서 사용되는 집합론, 선형대수, 미적분, 미분방정식 등의 수리적 개념과 기법에 기초한 경제이론을 강의한다.

● OA617 국제경제학특론(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s)

국제무역의 순수이론 영역인 비교 생산비율과 요소, 가격균등화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시켜 응용경제학으로서 국제경제학이 풀어야 할 정책 및 실증적 성향 문제를 연구, 분석한다.

● OA618 자원 및 환경경제학특론(Topics in Resource and Environmental Economics)

자원경제학은 사회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실증적이고도 규범적인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원이용과 관련된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를 연구한다. 환경경제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방법, 환경정책 수단들의 장·단점, 환경과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이슈 등을 연구한다.

● OA620 공공정책특론(Topics in Public Policy)

어떤 공공재가 공급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비용을 각자 간에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연구한다.

● OA621 지방재정특론(Topics in Local public Finance)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 지출 및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

● OA622 통계조사방법론 (Topics in Statistical Research Methodology)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통계학 이론을 강의하고 실제 자료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을 진행한다.

● OA623 계량경제학특론 (Topics in Econometrics)

경제이론이 현실경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는 경제수학적 방법, 주제별로 경제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통계적 기법, 추정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연구한다.

● OA624 산업조직과 산업정책특론

(Topic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dustrial Policy)

산업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원의 동태적 최적배분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이론, 산업조직론, 경제변동론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이론의 이해하에 최적산업구조정책을 연구한다.

● OA625 국제지역경제특론 (Topics in International Area Economics)

국제외교론적인 관점에서 국제경제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경제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 OA626 정책분석특론 (Topics in Policy Analysis)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특수성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대안을 모색한다.

● OA627 경제정책특론 (Topics in Economic policy)

정부의 경제정책 행위가 국민경제의 각종경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 OA628 정책평가특론 (Topics in Policy Performance Measurement)

경제체제, 제도, 관행 등에 관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경제정책과 시장이 경제운용을 djeg게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 OA619 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경제학 학위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연마하고 실례적인 논문작성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나. 글로벌MBA 전공(Department of Global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4186호, TEL: 450-2210, FAX: 450-6463
- 수여 학위명: 경영학 석사

1. 교육목표

-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MBA과정의 설치는 중국인 자비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유치하여,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캠퍼스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제 MBA 과정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협력하며, 실제 경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이러한 국제 MBA 과정은 학생들에게만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는 등 대학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함.
- 국제 MBA 과정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배출된 전문경영 전문가들은 기획자, 전략수립자, 재원조성가, 마케팅 전문가, 교육자 및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젝트 매니저, 국제 사업 파트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동하며, 경영 분야에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행정, 경영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한중 경영의 가치를 창출함.
- 국제 MBA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핵심 영역으로 경영 전략·통계,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짐.
- 본 전공의 기본목표는 사례연구, 문제해결 중심 교육, 국내의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배양하며,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한 진로를 고려한 심도 있고, 살아있는 교육을 지향.

2. 연혁 및 특징

- 2025학년도 경영행정대학원에 설치
-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 석사 과정으로, 전문 경영 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고두갑	교수	경제학박사 (일본중앙대학교)	공공경제학	450-2211 (go0983@mmu.ac.kr)
이창대	교수	경영학박사 (서강대)	회계학	450-2612 (leecdai@mnu.ac.kr)
강민정	교수	경영학박사 (서울대)	마케팅	450-2613 (7minjeong@mnu.ac.kr)
이한근	부교수	경영학박사 (연세대)	마케팅	450-2615 (hglee1007@mnu.ac.kr)
한 담	조교수	문학박사 (북경대학교)	중국현대문학	450-2143 (handam24@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T601	경영학의이해 (Business administration)	3
	OT602	한국의 정치외교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Korea)	3
	OT603	비즈니스 한국어 1 (Business Korean Language 1)	3
	OT604	비즈니스 한국어 2 (Business Korean Language 2)	3
	OT605	재무 및 회계 관리론(Finance & Accounting Management)	3
	OT606	한국의 문화 (Culture of Korea)	3
	OT609	미시경제 (Microeconomics)	3
	OT610	거시경제 (Macroeconomics)	3
	OT611	비즈니스 정보기술의 이해 (Understanding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3
	OT612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3
	OT613	마케팅 관리 및 분석 (Marketing Management and Analytics)	3
	OT614	조직행동론세미나 (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3
	OT615	경영전략 및 조직이론 (Strategic Management & Organizational Theory)	3
	OT616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3
	OT617	유통관리 (Channel Management)	3
연구과목	OT618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T601 경영학의이해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과목으로서 경영의 기초 개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경영학 세부 분야인 마케팅, 생산관리, 국제경영, 경영정보, 조직행동의 기본 의사결정 주제를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 OT602 한국의 정치외교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Korea)

현대 한국정치의 큰 흐름을 소개하고, 주요 쟁점들을 이론적, 처방론적 입장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쟁점들에는 정치과정론 적 이슈를 비롯하여, 정치사회론적 쟁점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국과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 · 경제의 발전상을 국제정치경제학적 견지에서 학습한다. 특히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지역(NIEs)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의 기층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민주화 발전의 성과 등을 비교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 창출의 가능성과 한계를 학습한다.

● OT603 비즈니스 한국어 1 (Business Korean Language 1)

비즈니스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비즈니스상담에서부터 마케팅, 경영실무와 관련한 한국어를 학습한다.

● OT604 비즈니스 한국어 2 (Business Korean Language 2)

비즈니스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비즈니스상담에서부터 마케팅, 경영실무와 관련한 한국어를 학습한다.

● OT605 재무 및 회계 관리론 (Financial and Accounting Management)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관리계획의 수립과 통제, 특수한 의사 결정, 경영자의 성과평가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이다. 본 과정은 계획(의사결정에 적합한 원가, C.V.P분석, 제품배합 및 기타 의사결정), 통제(책임회계, 예산과 표준원가 계산, 차이분석 및 조사), 부문별 조직(성과평가, 대체가격결정) 을 다룬다.

● OT606 한국의 문화 (Culture of Korea)

한국의 전통문화를 예절, 생활풍속, 음식, 역사 등과 같은 것을 통하여 학습한다.

● OT609 미시경제 (Microeconomics)

경제학의 기본개념으로 개인, 기업, 정부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을 연구한다. 각 주체의 자원 배분에 관한 이론적 분석능력을 개발하며, 수요와 공급, 시장구조, 가격결정 메커니즘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 과정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OT610 거시경제 (Macroeconomics)

국가경제 전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 국가경제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주요 지표들을 다룬다. 이 과정은 국민소득의 결정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요소시장, 상품시장, 화폐시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학파의 시각을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경

제시장에 관한 이론과 거시동태균형조건을 공부하며, 실질경기변동론 등 경기변동요인, 과정, 효과 등에 관해 이론적,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한다.

● OT611 비즈니스 정보기술의 이해 (Understanding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등의 첨단 정보기술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 OT612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 하는데 있어서 평가, 선택, 구매 및 소비행위는 과정에서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좌는 소비자행동의 주요 영역인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정보처리과정, 태도의 형성 및 변화, 학습, 소비자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에 대해 학습하고 최신 시장 트렌드로서 감성적 소비,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이슈에도 접근해본다.

● OT613 마케팅 관리 및 분석 (Marketing Management and Analytics)

본 강좌를 통해 미래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케팅사고와 관점을 함양 터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마케팅 현상을 이해 분석 비판할 능력을 갖춘다. 또한, 주요 사례를 학습 분석함으로써 마케팅 현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론이 어떻게 실제에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 전반을 포괄하는 과학적인 마케팅 방법론인 디지털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OT614 조직행동론세미나 (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에서의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인간적 기술(skill)을 함양하기 위한 강좌로서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에서의 인간행동을 강의한다.

● OT615 경영전략 및 조직이론 (Strategic Management & Organizational Theory)

경영전략 또는 전략경영은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대처)하며,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기업(또는 사업부나 조직)전체적인 관점 -최고경영자 또는 전반기경영자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학문 분야이다.

● OT616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마케팅전략연구에서는 시장, 기술 및 경쟁기업 등이 급변하는 동태적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경쟁우위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마케팅전략의 개발, 실행 및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을 학습한다.

● OT617 유통관리 (Channel Management)

유통관리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장소, 시간, 및 구매의 효용을 창조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본 교과목은 유통관리의 다양한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유통관리와 관련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학습한다.

● OT6618 논문연구

논문의 작성방법 등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도를 받는다.

● OT620 무역실무

국제 규범의 법적 심층 해석, 분쟁 해결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글로벌 통상 정책의 전략적 활용에 집중합니다. 또한 수출입 계약, 운송, 통관, 대금 결제 등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전 과정(계약~대금회수)을 처리하는 실무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 OT621 국제경영전략

국제경영전략은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구조 분석, 실질적 의사결정 방안을 학습하는 과정. 또한 환경 분석, 해외 진입 전략, 글로벌 공급망 관리, 조직 구조 및 제휴 전략 등을 다루며, 학술적 연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한다.

5. 학과간 협동과정

가. 지역발전정책학협동과정(Major in policies for Regional Development)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4187호 TEL: 061-450-2220
- 수여 학위명: 지역정책학석사(지역발전정책학)

1. 교육목표

- 사회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에게 경영·행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고 스스로 연구케 하여 고도 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성장·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재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2. 연혁 및 특징

- 2000년 3월 경영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
- 사회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정책수립에 집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함.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조준범	교수	공학박사 (서울시립대)	도시계획/ 도시설계	061-450-2221 (chaniran@mnu.ac.kr)
홍석호	부교수	공학박사 (고려대)	도시개발·지역개발·입 체도시	061-450-2224 (sukhohong@mnu.ac.kr)
정남식	부교수	공학박사 (서울시립대)	농산어촌 계획 및 지역재생	061-450-2223 (nsjung2020@mnu.ac.kr)
장성만	부교수	공학박사 (서울시립대)	공간분석 · 모빌리티 · 계량모델 · GIS	061-450-2222 (sjang@mnu.ac.kr)
성은영	조교수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도시형태/ 토지이용, 도시·부동산 빅데이터	061-450-2225 (eyseong24@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Z601	지역정책과정론(Regional Policy Making)	3
	OZ603	관광정책론(Tourism Policy)	3
	OZ604	지역개발론(Regional Development)	3
	OZ606	도시정책론(Urban Policy)	3
	OZ607	도시개발론(Urban Development)	3
	OZ608	지방자치세미나(Seminar in Local Administration)	3
	OZ609	지역문화론(Regional Culture)	3
	OZ610	지역활성화론(Revitalization of a Region)	3
	OZ612	지리정보체계론(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
	OZ614	인사행정세미나(Seminar i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
	OZ618	도시디자인(Urban Design)	3
	OZ619	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3
	OZ620	지역조사분석(Regional Survey & Analysis)	3
	OZ621	도시재생론(Revitalization of urban Enviroment)	3
	OZ622	도시계획론(Urban Planning)	3
	OZ624	지역정보체계론(Regional Planning)	3
연구과목	OZ617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Z601 지역정책과정론(Regional Policy Making)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지역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지역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왔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한국지역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 OZ603 관광정책론(Tourism Policy)

관광에 관련된 사업체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업, 운영, 마케팅, 재정의 기본지식을 이용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합적 사고능력과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OZ604 지역개발론(Regional Development)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개발의 본질론과 당면한 지역의 제 문제를 이해하고 개발정책, 개발전략, 개발계획에 대한 접근과 지역분석의 능력을 함양한다.

● OZ606 도시정책론(Urban Policy)

신도시 개발정책은 물론 재개발정책을 함께 나누어,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토록 한다. 특히, 도심활성화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 OZ607 도시개발론(Urban Development)

도시개발사업별 다양한 도시개발과정과 개발행위의 단계, 의사결정 기준 및 시점, 위험 통제기법 등을 고찰하며, 도시개발 주체로서 공공 및 민간개발자의 개발시각을 강의한다.

● OZ608 지방자치세미나(Seminar in Local Administration)

지방행정의 의의, 기능,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역할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 OZ609 지역문화론(Regional Culture)

지역문화 형성의 지리적 여건을 범주화하면서, 지역문화의 내용과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또한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특징을 탐색한다.

● OZ610 지역활성화론(Revitalization of a Region)

지역경제의 쇠퇴·침체 현상의 규명과 함께 선진 외국에서의 대처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 OZ612 지리정보체계론(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도시계획, 환경, 자원조사 등의 분야에서 정보 취득 및 관리의 한 방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OZ614 인사행정세미나(Seminar i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인사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대 인사행정의 실제 및 기본적 이론을 고찰한다. 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아울러 연구한다.

● OZ618 도시디자인(Urban Design)

도시설계의 개념과 도입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시설계의 종류와 특징, 변화과정에 대해서 연구한다. 또한 도시설계를 위한 개발기법을 이해하고 도시설계사례를 분석하는 관점을 정립한다.

● OZ619 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본 과목은 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복지정책과 인접 영역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학습한다.

● OZ620 지역조사분석(Regional Survey & Analysis)

지역내의 경제적 흐름을 수리적으로 파악·조사하여 지역경제구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현실적 지역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 그리고 지역간 교역현상을 분석한다.

● OZ621 도시재생론(Revitalization of urban Enviroment)

도시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쇠퇴함으로써 야기되는 도시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그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OZ622 도시계획론(Urban Planning)

도시의 일반적 개념과 계획에 대한 이론 연구 부문의 포함되며 여기에는 도시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도시 계획 이론과 수립 과정과 문제점, 실제 수립 과정과 문제점, 계획의 일반 이론 등을 연구하며 여타 도시 연구를 위한 기본 체계를 도모한다.

● OZ624 지역정보체계론(Regional Planning)

다양한 지역정보를 생산, 가공, 활용,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위하여 통계학의 지식과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의 분석, 관리 기법등을 강의한다.

● OZ617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논문의 작성방법 등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도를 받는다.

나. 사회적경제학협동과정(Major in Social Economics)

-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관 4186호 TEL: 450-2210
- 수여 학위명: 경영학석사(사회적경제학), 경제학석사(사회적경제학)

1. 교육목표

- 사회적경제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한 다양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분야의 학문적인 이론체계 확립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경영, 경제, 금융 등의 실무역량을 개발·증진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

2. 연혁 및 특징

- 2010년 9월 경영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
- 2021년 12월 전공 명칭변경(사회적기업학 → 사회적경제학)

3. 교수 소개

성 명	직 급	최종학위 (출신대학)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윤철호	교수	경영학박사 (광운대학교)	MIS	450-2611 (carlyoon@mnu.ac.kr)
이창대	교수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회계학 (관리회계/원가회계)	450-2612 (leecdai@mnu.ac.kr)
김기범	교수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회계	450-2619 (kkim@mnu.ac.kr)
강민정	교수	경영학박사 (서울대)	마케팅	450-2613 (7minjeong@mnu.ac.kr)
우형록	부교수	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인사조직, 경영전략	450-2614 (hrwoo@mnu.ac.kr)
이한근	부교수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국제마케팅	450-2615 (hglee1007@mnu.ac.kr)
고두갑	교수	경제학박사 (일본중앙대학교)	공공경제학	450-2211 (go0983@mmu.ac.kr)
장시복	교수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화폐금융	450-2213 (sibok@mnu.ac.kr)
정경화	교수	경제학박사 (미시간주립대학교)	미시경제학	450-2215 (jeongkyo@mnu.ac.kr)
정상준	교수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거시경제학	450-2218 (jeongsj@mnu.ac.kr)
정한나	부교수	경제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노동경제학	450-2219 (hnjung5493@mnu.ac.kr)

임선영	부교수	국제학박사 (부산대학교)	국제경제학	450-2216 (seonyoung220@mnu.ac.kr)
이성남	교수	법학박사 (고려대)	법학	450-2633 (leesn@mnu.ac.kr)
이형기	부교수	법학박사 (고베대)	법학	450-2632 (hkkobe1140@mnu.ac.kr)

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과 목 명 (영문과목명)	학점
전공과목	OH601	IT혁신기업사례연구 (IT Innovation and Startup company case study)	3
	OH602	비영리회계세미나(Seminar in Non-Profit Organization)	3
	OH603	경제활동과세금세미나(Seminar in Economic Activites and Taxation)	3
	OH604	사회적기업마케팅연구(A Study of Social Enterprise Marketing)	3
	OH605	사회심리학세미나(Seminar in Social Psychology)	3
	OH606	유통관리연구(Studies in Channel Management)	3
	OH607	사회적 경제론(Theory of Social Economy)	3
	OH608	사회적 금융론(Theory of Social Finance)	3
	OH609	미시경제학특론 (Topics in microeconomics)	3
	OH610	경제정책론(Theory of Economic Policy)	3
	OH611	사회적 기업과 노동시장연구(A Study of Social Enterprise and Labor market)	3
	OH612	국제경제정책연구(A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
	OH613	사회적 기업론(social enterprise)	3
	OH614	금융소비자보호론(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ory)	3
	OH615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3
연구과목	OH616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통과

◆ 교과목 해설 ◆

● OH601 IT혁신기업사례연구(IT Innovation and Startup company case study)

IT혁신과 관련한 최신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적인 스타트업 기업 사례들을 발굴하고 집중 탐구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기업 패러다임인 IT혁신 및 스타트업 기업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IT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운영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OH602 비영리회계세미나(Seminar in Non-Profit Organization)

다양한 비영리조직의 회계분야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학생이 선택한 연구주제를 추진시켜 논문으로 발전시킨다.

● OH603 경제활동과세금세미나(Seminar in Economic Activities and Taxation)

IT(정보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금 신고·납부와 징수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가령, 과거에는 3~4천 명의 세금 관련 업무를 10명의 전담직원이 담당했지만 지금은 단 1명의 전담직원 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잡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산식을 몰라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클레멘 홈텍스)이 요구하는 간단한 숫자만 입력해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세금과 회계연구는 이러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현상을 반영한 최신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감 있는 사례를 다룸으로써 세금 및 회계와 관련된 어려운 이론들을 보다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은 구성된다.

● OH604 사회적기업마케팅연구(A Study of Social Enterprise Marketing)

이제 기업의 사회책임활동(CSR)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사회적 기업 경영론』은 사회적 기업을 공부하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과 실무자에게 필수적인 교과서이다. 본 교과목은 사회적 기업가와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전략 경영, 재무 관리, 윤리 경영, 거버넌스,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와 같은 핵심 경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수업의 목표는 사회적경제의 학습을 통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올바른 지향점 정립, 사회적경제비즈니스모델 사례연구와 청년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고도화,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실전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소셜비즈니스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다.

● OH605 사회심리학세미나(Seminar in Social Psychology)

사회적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의 해명 및 사회-심리적 현상에 기저하는 규칙성과 법칙성을 학습하여 인간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 OH606 유통관리연구(Studies in Channel Management)

본 과목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유통시스템의 개념과 더불어 다양한 유통산업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유통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 시키는데 있다. 특히, 유통분야의 기본개념부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된 여러 유통관리 기법들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유통관리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 OH607 사회적 경제론(Theory of Social Economy)

시장과 정부,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도로서 구분된 영역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서로 모순되지않고 통합된 삶의 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맞물린지에 대해서 강의한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측정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을 것인지 연구한다.

● OH608 사회적 금융론(Theory of Social Finance)

이 강의는 사회적 경제의 차원에서 금융을 다룬다. 사회적 경제의 목표인 공동체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의 공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의 기능이 중요한 주제다. 이 강의에서는 협동조합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안 화폐로서 지역 화폐의 기능, 사회적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금융의 거시 기능을 다룬다.

● OH609 미시경제학특론 (Topics in microeconomics)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주요 미시경제학 모형을 학습하며, 중급 정도의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구조와 산업조직, 일반균형 이론, 게임이론, 시장실패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동 원리와 미시경제 정책을 연구한다.

● OH610 경제정책론(Theory of Economic Policy)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으로 나뉘 각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 경제정책의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결과를 고찰한다. 아울러 시장경제를 조율하고 개입하는 이들 경제정책이 사회적 경제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연구한다.

● OH611 사회적 기업과 노동시장연구(A Study of Social Enterprise and Labor market)

사회적 기업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등 국내·외 노동시장 동향 및 일자리 관련 강의를 진행한다.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등 통계 지표 분석, 노동시장 불평등 등 노동시장 관련 제반 주제를 다룸으로써 사회적 기업 전공가가 함양해야 할 노동시장 관련 주제를 연구, 분석한다.

● OH612 국제경제정책연구(A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국제경제정책의 기본 이론과 각 국가별 경제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책이 사회적 경제와 후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국제경제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강의한다.

● OH613 사회적 기업론(social enterprise)

사회적 경제 활동의 현상을 이해하며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목의 내용은 주로 사회적 경제활동의 주체인 사회적 기업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사회적 경제를 토대가 되는 사회적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사회적 금융현상과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정책,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제도를 다룬다.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 봄으로써 창조적인 사고와 사회적 경제의 정책입안자, 사회적 기업인 등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 OH614 금융소비자보호론(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ory)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법, 제도, 관행이 소비자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정책, 금융상품의 영업규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분야를 폭넓게 이해한다.

● OH615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본 과목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을 도출한다.

● OH616 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위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연마하고 실례적인 논문작성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